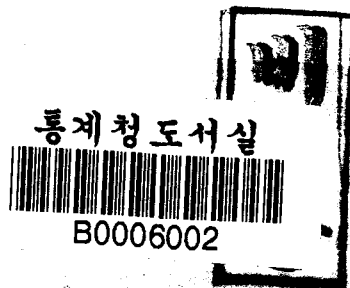


1974년  
광공업 통계 조사  
조사 요령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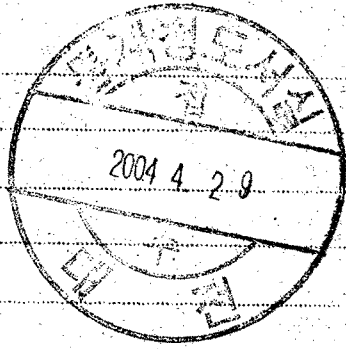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목 차

310.111  
730147  
1994

I. 조사 개요	3
1. 조사 목적	5
2. 조사의 법적근거	5
3. 조사 연혁	6
4. 조사 체계	7
5. 조사 시기	7
6. 조사 범위	8
7. 조사대상 사업체의 결정	11
8. 조사 단위	12
9. 조사 사항	13
10. 조사표 종류	14
11. 조사 방법	14
12. 집계 및 공표	15
II. 조사원의 임무	17
1. 조사 업무의 순서	19
2. 조사용품의 수령	19
3. 사건 조사	20
4. 면접요령 및 실사	22

B6002



5. 실사 진도보고	25
6. 조사표의 회수 및 제출	25
7. 기 타	26
Ⅲ. 조사표 기입요령	29
1. 일반적 유의사항	31
2. 항목별 기입요령	32
가. 조사표Ⅰ (사업체용)의 기입요령	32
나. 조사표Ⅱ (본사 또는 본점용)의 기입요령	52
Ⅳ. 조사표 검토 정리요령	55
1. 항목별 검토 정리 요령	57
2. 산업별 문제점 및 유의사항	59
부록 1. 주요상품 생산자 판매 가격표	81
부록 2. 도량형 단위 환산표	93
부록 3. 조사표류	97

# I 조 사 개 요

# I. 조 사 개 요

## 1. 조사 목적

광공업통계조사는 광업, 채석업 및 제조업 부문의 구조와 생산활동의 과잉과잉을 파악하고 동 부문에 있어서의 고용, 투자, 생산등의 제반 상황을 측정함으로써,

가. 공업화의 정도와 산업구조의 변화를 매년 파악하고

나. 정부의 장단기 경제정책 입안과 경제정책의 효과 측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조사의 법적 근거

이 조사는 통계법(법률 제 980호)에 의하여 지정통계 17호로 지정된 통계이며 따라서 해당 사업체에서는 본 조사에 신고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

또한 이 조사에서 얻어진 통계자료는 통계법의 규정에 의하여 비밀이 엄격히 보호되고 통계 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할 수 없으며 통계조사 공무원이 그 직무 집행에 관하여 지득한 사실에 대하여는 타인에게 누설(漏洩)하거나 도용(盜用)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懲役)이나 만원 이하의 벌금(罰金)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통계법제11조:통계목적 이외의 사용금지규정, 제21조:벌칙 규정)

(통계법(註))

제2조(정의) 본법에서 지정 통계라 함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하는 통계 또는 기타의 기관에 위임하여 작성하는 통

제로서 경제기획원 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통계를 말한다.

제 5조 (신고 의무)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기관의 장은 지정통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인, 법인, 기타의 단체에 대하여 통계자료의 신고를 명할 수 있다.

제 10조 (비밀보호) 통계조사의 결과 알려진 개인, 법인, 기타의 단체의 비밀은 보호되어야 한다.

제 20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懲役)이나 5천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 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를 한 자.

2. 제 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방해한 자.

### 3. 조사연혁 (沿革)

광공업 센서스 (지정통계 제 6호)

1 회	1955년	한국은행	주관
2 회	1958년	한국산업은행	주관
3 회	1960년	상공부	한국산업은행 공동주관
4 회	1963년	경제기획원	한국산업은행 공동주관
5 회	1966년	"	" "
6 회	1968년	"	" "
7 회	1973년	경제기획원	주관

광공업 통계조사 (지정통계 제 17 호)

1 회	1967 년	경제기획원	한국산업은행	공동주관
2 회	1969 년	경제기획원	주관	
3 회	1970 년	"		
4 회	1971 년	"		
5 회	1972 년	"		
6 회	1974 년	"		

4 . 조사체계

가. 경제기획원장관 → 시장 및 도지사 → 지도원 → 조사원 → 대상 사  
업체

나. 지도원

지도원은 시장 및 도지사의 추천에 의하여 경제기획원 장관이  
임명 하고, 지도원은 조사표류의 배부, 수집, 확인등의 사무에 종사  
하며 관하 조사원을 지도 감독 한다.

다. 조사원

조사원은 시장 및 도지사의 추천에 의하여 경제기획원 장관이  
임명 하고 관할 조사구의 조사업무에 종사한다.

5 . 조사시기

가. 조사기준일 : 1974. 12. 31 일 현재

나. 조사대상기간 : 1974.1.1 ~ 1974.12.31 까지 ( 1개년간)

다. 조사실시기간 : 1975.4.1 ~ 4.30 일까지 ( 1개월간)

## 6. 조사의 범위 (範圍)

이 조사의 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대분류「2」에 해당하는 「광업 및 채석업」과 대분류「3」에 해당하는 「제조업」이다.

(별책, 산업분류 및 품목분류표 참조)

### 가. 광업 및 채석업의 정의 (定義)

광업 및 채석업은 유기물 또는 무기물에 관계없이 넓은 의미에서 자연 그대로의 기체 (석탄가스), 액체 (원유), 고체 (석탄 및 금속)의 광물을 채광, 채취 및 채석작업을 하는 사업을 말하며, 또한 광석중의 혼잡물을 제거하기 위한 모든 추가활동 즉 섶광 (碎鉱), 세척 (洗滌), 제질, 선광 (選鉱), 용해 및 건조등을 광산 경영업자가 하든, 타사업자가 하든 간에 포함된다.

단, 광업 및 채석활동과 연관되지 않고 경영되는 흙, 돌 및 광물의 파쇄, 분쇄 또는 다른 상태로 변형시키는 것은 기타 광물제품 제조업 (3699)에 포함된다.

### 나. 제조업의 정의

제조업이란 유기 또는 무기물질에 기계적 또는 화학적 작용을 가함으로써 그것을 새로운 생산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그 작업은 동력에 의하여 이루어지든, 사람의 힘에 의하여 이루어지든, 또는 공장에서 행하여 지든, 집에서 행하여 지든 이를 가리지 않는다.

#### (1) 제조업과 다른 산업과의 관계

##### (가) 농림수산업 (農林水産業) 과의 관계

① 농가, 어가 (漁家) 등에서 자가 채취 또는 재배한 원재료를



사용하여 가공 또는 제조하는 경우는 제조업으로 보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일지라도 유급 노동자를 5명 이상 고용하고 있을 때에는 조사대상으로 한다.

② 어선(漁船) 내에서 행하는 어류 및 해산물 식품의 가공 또는 제조는 제조업으로 보지 않는다.

③ 제재기계(製材機械) 또는 기구로서 각재(角材) 또는 판재(板材)를 제조하는 사업은 그 장소가 임야이전 아니건 제조업에 포함하나 벌목업(伐木業)과 벌목현장에서 세지(細枝)를 절단하여 원목을 만드는 목재 절단업은 제조업으로 보지 않는다.

(나) 건설업(建設業)과의 관계

제조된 부분품을 조정 또는 조립(組立)하는 활동은 제조업으로 보나 조립식 부분품, 완전부분품을 토지에 정착하여 교량, 물탱크, 보관 및 창고시설, 철도 및 고가도로, 승강기와 에스컬레이터, 수도관, 살수기, 통풍장치 및 에어컨디셔너, 전동 및 전선등을 조립하는 활동과 빌딩의 시설, 건축의 모든 활동은 건설업으로 분류되며 본 조사에서 제외한다.

(다) 도, 소매업과의 관계

① 접객시설을 갖추어 놓고 개인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빵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체는 음식업에 분류되나 식빵, 케이크 및 기타 부패성 있는 빵제품 제조에 주로 종사하는 사업체는 제조업에 포함된다.

그러나 접객시설을 갖추고 있더라도 주로 도, 소매업자 또는 행사인에게 빵제품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체는 제조업으로

본다.

- ② 양복점, 양장점, 양화점의 경우 개인의 주문에 의하더라도 제조를 주로 하는 사업체는 제조업으로 분류된다.
- ③ 농림, 수산물의 출하를 위하여 선별(選別), 포장(包裝)만을 하는 사업체는 제조업으로 보지 않는다.
- ④ 스스로는 제조활동을 하지 않고 자기소유의 원재료를 하청업자(下請業者)에게 지급하여 제조하고 이를 자기 명의로 도매하는 도매업자는 제조업자에 포함하지 않는다.

(라) 임가공업(賃加工業)과의 관계

타기업의 소유에 속하는 원재료에 가공처리를 하고 가공임을 받는 경우에는 제조업으로 본다.

이 경우 동일산업(제조업과 제조업간)의 수탁제조는 임가공로만 조사하고 타산업(他産業) 즉, 정부에서나 도, 소매업 부문에서 수탁받아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는 제조업체에서 원재료를 구입하여 제품을 출하하는 것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생산비, 출하액등을 전부 조사하여야 한다.

예를들면 도매업자가 원재료를 제공하여 위탁생산을 한 경우에 하청업자 자신이 원재료를 구입하여 생산, 출하한 것으로 간주하여 조사한다.

(마) 수리업(修理業) 또는 세어비스업과의 관계

- ① 주요 가정용구(스토브 및 요리용 난로,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의 설비, 가구장착, 자동차, 자전거 및 기타 소비자 상품을 수선하는 사업체는 수선되는 상품의 종류에 관련된 수선 세어비스업(951)에 분류되므로 조사대상에서 제외된다.
- ② 따라서 개개의 가정소비자(家庭消費者)로부터 직접 위탁을

받아 표백, 염색, 정리(整理) 하는 경우(세탁소, 염색소)는 제조업에서 제외한다.

(가) 출판, 발행업과의 관계

신문사나 출판사는 인쇄시설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발행, 출판 업무를 하고 있을 때에는 제조업으로 본다. 그러나 신문사의 지국과 같이 주로 뉴스의 공급만을 하는 것은 제조업으로 보지 않는다.

(나) 보조업종과의 관계

자가 발전소, 연구실, 창고, 부속병원, 직영식당등과 같이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체에 부수되어 보조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은 그 주된 산업에 포함시켜 조사한다.

7. 조사대상 사업체의 결정

1974년 12월 31일현재 국내에 실재(實在)하는 사업체로서,  
가. 1974년 12월 31일현재 종업원수 5명 이상인 사업체  
나. 1974년 1년중 또는 12월중 조업일(操業日)의 평균 종업원수가 5명 이상인 사업체  
다. 1974년 12월말현재 휴업중(休業中)이라도

- (1) 1974년중의 조업일수가 90일 이상이고,
- (2) 조업기간(操業期間)중의 평균 종업원수가 5명이상이었던 사업체,

(예: 제빙업 사업체)

라. 제염사업체(製鹽事業休)는 조업일수가 90일 미만(未滿)이라 하여라도 조업 기간중의 평균 종업원수가 5명이상인 사업체

단, 정제염(精製鹽)을 제조하는 사업체는 통상적인 제조업으로 보아 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90일 미만을 조업한 사업체는 제외되어야 한다.

마.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체는 조사대상에서 제외한다.

- (1) 군(軍)이 직영하는 사업체
- (2) 공공직업보도소 및 교도소의 작업소  
예 : 갱생원, 재활인원(再活人院)
- (3) 공공단체 및 학교에 속해 있는 실습장, 시험소, 연구소  
예 : 학교 실습장

#### 8. 조사 단위 (調査單位)

조사 단위는 사업체이다.

사업체라 함은 개개의 공장, 작업장, 광산사업소 등과 같이 일정한 물리적 장소에서 경제활동(제품, 광산물의 생산 또는 이의 보조적인 업무)을 영위하는 경제 단위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취급한다.

가. 동일구내(同一構內)에 있더라도 별개의 사업체로 보는 경우

- (1) 단일 경영체에 속하는 몇개의 사업장이 동일한 장소에 있고 출근부와 임금대장 및 재산목록 등 경영장부(經營帳簿)를 각 공장별로 구분하여 가지고 있으면 별개의 사업체로 본다.
- (2) 경영장부를 별개로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원재료 구입액(原材料購入額), 제품생산액(製品生産額) 및 출하액(出荷額) 등을 공장별로 구분하여 조사할 수 있는 경우는 경영장부가 공장별로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별개의 사업체로 취급한다.

나. 떨어져 있어도 하나의 사업체로 보는 경우 :

서로 떨어져 다른 구내에 분리되어 있어도 경영장부 또는 기타 기록이 한군데로 통합되어 있을 때에는 그 장부를 주관하고 있는 사업체에 포함시켜 하나의 사업체로 간주하여 조사한다.

이때에 장부를 주관하고 있는 사업체가 다른 조사구에 있는 경우에는 자기 조사구에서 사업체 및 본사 소재지, 전화번호, 조직 형태, 창설년, 생산공정, 종업원수는 반드시 조사하고 그 이외의 항목도 가능한데 까지 조사하여야 한다.

## 9. 조사사항

### 가. 조사표(Ⅰ) (사업체용)

- |                  |                        |
|------------------|------------------------|
| ① 사업체명 및 소재지     | ⑩ 연간출하액 및 기타수입액        |
| ② 본사명 및 소재지      | ⑪ 연초 연말 재고액            |
| ③ 조직 형태          | ⑫ 완제품출하액 및 재고액의 품목별 내역 |
| ④ 창설년월일          | ⑬ 주요 생산비               |
| ⑤ 자본금 또는 출자금액    | ⑭ 유형고정자산의 연간 취득액 및 처분액 |
| ⑥ 주요 생산품명 및 생산공정 | ⑮ 건설가계정                |
| ⑦ 종업원수           | ⑯ 조사표 작성근거             |
| ⑧ 월별 조업일수        |                        |
| ⑨ 연간급여액          |                        |

### 나. 조사표(Ⅱ) (본사(본점)용)

- |                 |              |
|-----------------|--------------|
| ① 본사(본점)명 및 소재지 | ③ 조직 형태      |
| ② 창설년월일         | ④ 자본금 또는 출자금 |

- ⑤ 종업원수 및 연간급여액
- ⑥ 원재료 및 연료재료액
- ⑦ 유형고정자산의 연간 취득액 및 처분액
- ⑧ 건설가계정
- ⑨ 조사표 작성근거
- ⑩ 관할 사업체 명부

10. 조사표의 종류 ( 調查票의 種類 )

이 조사에는 다음과 같이 2종의 조사표를 사용한다.  
 가. 본 조사표(I).....본사 이외의 모든 대상업체에 적용한다.  
 나. 본사 조사표(II).....사업체의 본사(또는 본점)를 대상으로 하며 다음의 경우에 해당한다.

- (1) 산하 사업체와 독립된 장소에 있으며 장부가 독립되어 있는 경우
- (2) 관할 사업체와 동일한 장소에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장부가 독립되어 있는 경우
- (3) 2개 이상의 산하 사업체를 가지고 있고 그중 어느 한 사업체와 같은 장소에 있는 경우.

단, 이때에는 관할 사업체 명부란만 기입하고 그 외의 사항은 본사와 같은 장소에 있는 사업체에 포함하여 조사표(I)에 작성한다.

11. 조사 방법

타계식(他計式) 조사방법에 의한다. 즉 조사원이 조사 대상사업체 명부에 의하여 개개의 사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조사표를 기

입한다. 단, 일부 대규모 사업체와 같이 장부비치(帳簿備置) 사업체에 대하여 미리 조사표를 배부하여 기입케 한후 이를 회수하여 검토하고 필요 사항을 보완하는 자제식(自計式) 조사방법도 병행할 수 있다.

## 12. 집계 및 공표

전 조사항목에 대하여 조사표가 수집되는 대로 내검, 질의조회, 부호기입 과정을 거쳐 기계 집계로 처리한 후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를 발간 공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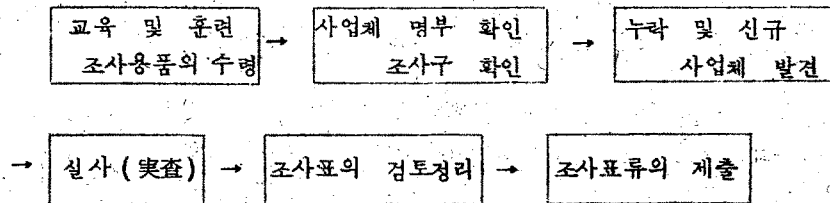
## Ⅱ 조 사 원 의 임 무



## II. 조사원의 임무

조사원은 지도원의 지휘감독을 받아 조사업무를 수행한다. 조사원은 조사의 제일 선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본 조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맡은 바 임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다음에 의거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 1. 조사업무의 순서



### 2. 조사용품의 수령

가. 조사원증

나. 사업체 명부

다. 조사표류

(1) 조사표 (I)

(2) 조사표 (II)

라. 참고책자

(1) 광공업 통계조사 요령서

(2) 산업분류 및 품목분류표

마. 보조 인쇄물

(1) 실사진도 보고

(2) 협조 의뢰문

바. 조사용품

사. 조사표 가방

아. 기타

3. 사전조사 (事前調査)

가. 조사구의 확인

(1) 조사원은 사업체 명부를 수령한 후 이를 참조하여 담당 조사구의 범위 경계를 명확히 알아야 한다.

(2) 범위나 경계가 명확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도원이나 동, 읍, 면 직원의 협조를 얻어 담당 조사구의 경계를 명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3) 또는 인접조사구 담당지도원과도 이를 협조하여 중복과 누락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사업체 명부 확인 및 보완

(1) 조사원은 자기담당 조사구내의 지리적 조건을 충분히 파악하고 최단거리로 전 지역을 빠짐없이 답사할 수 있도록 노순(路順)과 일정(日程)을 포함한 사업체 확인, 보완 및 실사 계획을 세워야 한다.

(2) 사업체 명부 확인

교육기간중에 수령한 명부는 1974년도 실사(實査)를 위하여 여러 조사에서 파악된 사업체가 수록된 것이므로 조사원은 담당 조사구내를 일일이 답사하여 이들 사업체의 존재(存廢)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사업체명부 보완

(가) 실지(實地) 답사(踏査)하여 1974년 이전에 설립된 사업체로서 누락된 사업체와 1974년도에 설립된 신규사업체를 발견하여 사업체명부 후단 공란에 기입하고 비교란에 신규라 표시한다.

(나) 현존 사업체는 「사업체명」,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종업원수」, 「생산품명」의 기록사항을 확인하여 오기(誤記)사항을 사업체명부에 직접 정정 기입한다.

(다) 폐업(廢業), 이전(移轉) 사업체는 복선(=)으로 삭제하고 비교란에 해당월(月)을 표시하고 폐업 또는 이전이라고 기입한다.

그러나 이전 사업체는 이전 사업체의 소재지를 파악하여 주소란에 정정 기입한다.

(라) 대도시 지역의 고층건물 지대도 필히 답사하여 사업체를 색출하여야 하며 특히 본사가 있는가 없는가를 일일이 확인하여야 한다.

만일 본사가 새로이 발견되면 사업체명부에 기재하고 비교란에 본사라고 기입한다.

(마) 담당 조사구내에 1975년도에 신설사업체가 발견될 때

명부 후단에 기입하고 비고란에 1975년 설립(設立)이라고 적어 넣는다.

#### 4. 면접요령(面接要領)과 실사(実査)

##### 가. 면접요령(面接要領)

- (1) 조사원은 대상사업체를 방문하여 사업주 또는 실무자와의 면담을 요청할 때에는 단정한 용모와 정중한 태도로서 자기 소개를 먼저한 다음에 조사원증(調査員証)을 상대방에게 제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 (2) 자기 소개와 양해를 구하는 인사가 끝나면 조사표를 제시하고 조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고 동시에 이 조사는 지정통계로서 통계법에 의하여 조사대상 사업체는 신고 의무가 있으며 자료는 비밀이 보호된다는 점을 설명하고 이번 조사는 13번째 조사이며 지난해와 같이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한다.
- (3) 대규모 사업체(장부 비치 사업체)와 같이 즉석에서 조사하기가 곤란할 때에는 조사표를 교부한 후 각 항목별로 구체적인 기입요령을 설명하여야 한다.
- (4) 즉석에서 조사가 가능하여 직접 문답식으로 조사를 하는 경우 각 항목별로 연관이 되지 않고 불성실한 답변을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언쟁을 하는 등의 태도를 보이지 말고 침착한 태도로 상대방의 이해를 얻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 조사를 거절하는 경우

피조사자(被調査者)가 비협조적이거나 거절을 하는 태도를 보일 때에도 조사원은 당황하거나 불손한 태도를 보여서는 절대로 안되며 조사목적의 중요성을 설명하여 응답자의 협조를 구하여야 한다.

그 자리에서 조사가 어려울 때는 두번 세번 재방문(再訪問)하여 성의(誠意) 있는 태도로 조사에 임하면 협조를 얻을 수 있다. 단, 이와 같이 하여도 시종 거절할 경우에는 소속 지도원에게 경위와 사유를 보고하여 지시를 받는다.

나. 실 사(実査)

(1) 조사원은 조사표기입요령(Ⅲ) 조사표검토정리요령(Ⅳ)을 충분히 이해하고 조사에 임하여야 한다.

(2) 사업체를 방문하였으나 사업주 또는 담당 실무자가 부재중(不在中)이거나 일시 휴업일인 경우는 비망록에 사업체명, 소재지 및 조사를 못한 사유를 기록하여 후일의 방문에 대비한다.

(3) 어떠한 경우라도 타인에게 조사를 의뢰하거나 조사표의 기입을 전적으로 사업체에 의뢰하여서는 안되며 조사표 회수시(回收時)에는 전후 기재내용을 상호 대조하거나 미상(未審)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체에 재차 문의하여 모순된 점이 있으면 결산서에 기재된 내용을 참조 확인하여 재조사(再調査)하여야 한다.

(4) 본사와 분리된 사업체의 조사

(가) 본사(또는 본점)와 분리되어 있는 사업체의 조사표는 본사의 주소, 전화번호를 재확인하여 누락과 오기(誤記)가 없도록 한다.

(나) 이 때에 조사표는 사업체에서 완전히 조사토록 하며 장부가 완전히 분리되지 않아서 전 항목의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는  
①사업체명 및 소재지, 전화번호 ②본사명 및 소재지, 전화번호 ③ 창설년월일 ④조직형태 ⑤주요생산품명 및 생산공정 ⑥종업원수  
⑦급여액 ⑧품목별 출하액 및 연초, 연말재고액 ⑨연초, 연말재고액(품목별 내역 포함)은 반드시 조사하여야 한다.

(5) 본사의 조사

(가) 산하사업체(傘下事業體)와 독립된 장소에 있는 경우:

본사(또는 본점)……조사표(Ⅱ)로서 해당사항을 조사하고  
산하 사업체……개개의 공장(사업체)별로 조사표(Ⅰ)을 각기 구분하여 조사한다.

(나) 2개 이상의 산하 사업체를 가지고 있고 그중 어느 한 사업체와 같은 장소에 있는 경우:

본사(또는 본점)……①조사표(Ⅰ)로서 같은 장소에 있는 공장(사업체)에 포함하여 조사한다.

②조사표(Ⅱ)는 관할 사업체 명부란만 조사한다.

산하사업체……본사와 같은 장소에 있는 사업체는 본사와 함께 (Ⅰ)표로서 조사한다.

(6) 덕대계 채택광산은 덕대단위로 조사한다.

단, 덕대업체를 조사할 때는 생산량을 파악한 후 관련자료를

검토하여야 한다.

### 5. 실사진도보고 ( 實查進度報告 )

가. 조사원은 조사기간중 사업체의 색출, 조사표의 교부 및 회수 등 조사활동사항을 실사진도보고 ( 소정양식 ) 에 의하여 소속 지도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지도원은 **판할** 조사원으로부터 실사진도보고를 수집하여 문제조사구에 대해서는 지도지침에 의거 처리한 후 실사진도와 함께 책임지도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 책임지도원은 조사원 및 지도원으로부터 보고되는 조사활동 전반에 관한 사항을 중앙에 수시로 보고한다.

라. 실사진도보고 제출일자

구 분	제 1 차	제 2 차	제 3 차
조 사 원	4 월 6 일	4 월 16 일	4 월 26 일
지 도 원	4 월 8 일	4 월 18 일	4 월 28 일
책 임지도원	4 월 10 일	4 월 20 일	4 월 30 일

### 6. 조사표의 회수 및 제출

가. 조사표 회수

(1) 조사표는 조사원이 직접 기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즉석에서 기입이 곤란하거나 응답자가 원하는 경우엔 응답자에게 의뢰하되 조사표회수시 완결된 조사표를 조사표 검토요령에 의거 오기 ( 誤記 ), 누락 ( 漏落 ) 사항이 없는가를 **검토**하여야 한다. 이때에 전화번호는 반드시 재확인 한다.

(2) 지도원은 조사원이 제출한 조사표를 조사원 입회하에 재심사 ( 再審査 ) 하여 불완전한 점이 발견되면 재조사 하도록 한다.

(3) 지도원은 조사 누락시킨 사업체를 반드시 조사하여 조사표를 회수토록 하여야 한다.

(4) 조사원은 조사표를 4월 30일 이내에 완전히 작성하여 지도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조사표 제출

(1) 조사원은 조사표가 완전한 것으로 확인되면 사업체명부의 조사표 번호순으로 모아 철하고 조사표 가방 표지(表紙)에 기입사항을 기록한 연후 사업체명부(교육기간중 배부받은 실사용 사업체명부)와 함께 실사기간내에 소속 지도원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2) 책임지도원은 지도원으로부터 회수한 조사표를 검토완료하여 시,도 단위로 조사완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중앙에 송부토록 하여야 한다.

7. 기 타

가. 조사가 완료된 조사표는 실사 완료시까지 보관하여야 하므로 보관에 유의하여야 한다.

나. 조사용지 절약에 유의하되 만약 조사도중에 용지 부족이 예견되면 지도원에게 연락하여 지체없이 보충하도록 한다.

다. 조사도중에 미심한점이 생기면 조사요령서 또는 기타 배부자료를 다시 읽어 보고 해결하거나 소속 지도원에게 문의하여 해결하도록 할 것이며 조사원 임의로 애매한 처리를 하여서는 안된다.

라. 비록 사업체에서 허위자료를 제공할지라도 독단적인 판단으로 가입하지 말고 항상 진후 기재내용을 상호 대조하거나 또는 재차 문의하여 정확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 조사표의 기재내용을 타용지에 전사(轉寫)하거나 외부사람에게 알려서는 안된다(통계법참조).

바. 배부하고 남은 협조의뢰공문이나 배부된 책자는 지도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 Ⅲ 조사표기입요령

### Ⅲ. 조사표 기입요령

#### 1. 일반적 유의 사항

조사원은 조사표의 기입에 앞서 조사항목의 정의 및 기입요령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따라 완전하고도 정확한 조사표를 작성하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조사표는 심사 완료후 심사, 분류, 집계등 여러작업에 계속 사용될 것이므로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가. 조사표는 반드시 흑색이나 청색의 「잉크」나 「볼펜」을 사용하여 금액 단위의 각란에 맞도록 깨끗히 기입하여야 한다.

나. 숫자는 반드시 1, 2, 3...과 같은 「아라비아」 숫자로 기입하며 기입한 숫자는 혼동되지 않도록 또박 또박 기입한다.

※ 기입에 유의할 숫자: 0과6, 1과7, 4와6, 4와9, 5와6, 5와8, 6과2, 3과8 등

다. 한자(漢字)로 기입할 경우는 정자(楷書)로 기입한다.

라. 각 수량 및 금액란은 단위를 정확히 구분하여 기입하며 천원 미만의 금액은 4사5입하고 4사5입하여 천원에 미달되는 금액은 「0」으로 표시한다.

마. 조사표 상에 「☆」란은 기입하지 않는다.

바. 해당사항이 없는 란은 사선을 좌상(左上)에서 우하(右下)로 그으며(∧) 정정할 때에는 오기(誤記)된 곳에 적색으로(=) 긋고 그 바로 위에 정확한 것을 기입한다.

사. 품목명 및 품목번호는 「품목분류표」에 의거하여 정확히 기록되어야 한다.

아. 단위는 「품목분류표」에 지정된 단위를 사용하여야 하며 사업체에서 사용하는 단위와 상이할 때는 지정 단위로 환산하여야 한다. 단 환산이 극히 복잡하여 어려울 때는 사업체에 문의하여 환산 가능한 방법을 모색하여 적요란에 기입하도록 노력한다.

## 2. 항목별 기입요령

### 가. 조사표(1)의 항목(項目)별 기입요령

#### 1) 사업체명 및 소재지

가) 사업체의 명칭이라 함은 사업체가 영업상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명칭을 말하며 반드시 사업체의 구체적인 명칭을 기입한다.

예: 「한국××공업주식회사 진해공장」

「주식회사××산업사 울산공장」

나) 일정한 사업체 명칭이 없을 때는 대표자(또는 사업주)의 성명만을 기입한다.

다) 사업체의 소재지는 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실제장소를 말하며 시, 도의 명칭부터 번지수, 통, 반에 이르기까지 상세하게 기입하며 다음과 같이 미리 인쇄되어 있는 행정 단위 명칭에 반드시 ○표를 표시하여야 한다.

예:

서울특별시	구	로·동	가	
부산직할시	대전시	은행동	136번지의	16호(2통3반)
충청남도	군	읍·면	리	

라) 주소는 한글로 기입하며 한문을 기입할 경우는 정자(楷書)로 기입한다. (통반까지 상세히 기입할 것)

마) 전화번호란을 각별히 유의하여 누락시키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 2) 본사(본점)명 및 소재지

가) 본사가 별도로 없이 사업체와 동일한 장소에 있는 경우 「상동」이라고만 기입한다.

나) 사업체와 분리되어 있는 것은 사업체명 및 소재지의 기입 요령과 같은 요령으로 기입한다.

다) 덕대제 채택에 의하여 채광되고 있는 덕대 광산은 본사 명칭 및 소재지란에 위와 같은 요령으로 위탁한 광업사업체의 명칭 및 소재지, 전화번호를 기입하되 본사명 좌측 여백에 덕대라고 기입하여야 한다. 단, 덕대제를 채택하고 있는 광업체가 관할 사업체가 없이 직접 채광을 하지 않은 경우는 본 조사에서 제외한다.

## 3) 창설년월일(創設年月日)

가) 법인이 경우는 법적 설립년(設立年)월일을 기입하고 개인 사업체인 경우에는 현재의 장소에서 현재의 사업을 시작한 해(年)를 기입한다.

나) 본사와 떨어져 있는 사업체인 경우는 그 지점 사업체가 신설된 때를 기입한다.

다) 업종을 변경한 경우는 업종을 변경하였을 때를 기준으로 한다.

라) 동일업종으로서 경영주가 상속하여 계승한 사업체는 최초로 창설한 해를 기입한다.

#### 4) 조직 형태 (組織形態)

가) 조직형태라 함은 사업체의 경영주체(기업체)의 법적조직 형태를 말한다.

나) 이 조사에서는 주식회사, 법인 및 개인의 세 가지로 구분한다.

(1) 주식회사는 상법(商法)에 의하여 설립된 것을 말한다.

(2) 기타법인은 상법에 의하여 설립된 합명회사(合名會社), 합자회사(合資會社), 유한회사(有限會社)와 민법(民法) 및 특수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3) 개인 사업체라 함은 1인 소유의 사업체를 말한다.

2인 이상이 동업을 하거나 또는 법인격(法人格)이 없는 조합과 같은 임의단체(任意團體)도 포함된다.

다) 이 항목은 사업체가 속해 있는 영업주체(기업체)가 법인인가 개인인가를 구분하고, 법인의 경우 주식회사와 기타법인으로 구분한 다음 해당 항목의 ( )내에 ○표한다.

#### 5) 자본금(資本金) 또는 출자금액(出資金額)

가) 이 항목은 법인 사업체에 한해서만 기입한다.

나) 1974년 12월 31일 현재로 불입이 완료된 자본금 또는 출자금액을 기입한다.

다) 본사와 떨어져 있는 법인 사업체의 경우는 본사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액을 기입한다.

## 6) 주요 생산품 및 생산공정 (生産工程)

### 가) 주요 생산품명

(1) 이 항목은 사업체의 업종을 분류하는 데 기준이 되는 것이며 사업체가 한 종류의 품목만을 생산할 때에는 그 품목을 기입한다.

(2) 두 종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할 때에는 출하액이 큰 순위로 3가지만 선택하여 기입한다.

가) 1974년 1년간의 출하액 또는 수입액이 가장 많았던 생산품.

나) 만일 가) 항의 방법으로 선택이 곤란할 때에는 종업원 수 또는 설비의 정도가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는 생산품.

다) 생산품이 계절적으로 변동할 때에는 최근의 실적에 관계없이 1974년 1년간에 출하액 또는 수입액이 가장 많았던 생산품.

라) 한 사업체가 벌목과 제재 또는 점토채굴(粘土採掘)과 벽돌제조를 일관(一貫)작업으로 하고 있을 때에는 최종 생산품인 「목재」 또는 「벽돌」을 주생산품으로 선정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원목을 원목대로 판매하고 극소량만을 제재할 경우에는 그 주된 사업은 결국 임업(林業) 중 벌목업으로 보아야 한다.

마) 조사표(I)13의 품목별 완제품 출하액의 ①번 항목과

반드시 일치하여야 한다.

나) 주요 사용 원재료명

(1) 이 항목은 원재료가 무엇인가에 따라 산업분류가 달라 지므로 정확한 산업분류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항목 이다.

(2) 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두 종류이상의 원재료가 투입될 경우 주요사용원재료부터 3 가지만 선택하여 기입한다.

마) 생산공정 (生産工程)

(1) 생산공정은 주된 품목 하나에 대하여 최초의 투입품명 (원재료명)부터 최종적으로 산출되는 품명까지의 순서를 단계적으로 요약 기입 한다.

예: 가) 광업의 경우

① 무연탄의 채굴부터 선광(選畝)까지 일관작업을 하고 있는 경우

「채굴→선광→무연탄」

나) 제조업의 경우

※ 최초의 투입 원재료는 원재료라 기입하지 않고 반드시 그 명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① 구루타민산 소다(구루타민산 나트륨)을 제조하는 경우

「전분(澱粉)→당화→발효→농축→산분해(酸分解)→여과→농축→염산염(鹽酸塩)→탈색→결정→구루타민산소다」

② 전분을 제조하는 경우

「고구마·옥수수→마쇄전분유(磨碎澱粉乳)→침전→전분→



정제→생전분]

③ 콜라를 제조하는 경우

「설탕물→용해→여과→첨가물배합→여과→원액저장→원액주입  
→탄산수주입→타전→콜라」

④ 면사를 제조하는 경우

「원면(原綿)→면조(綿條: Sliver)→정방(精紡)→단사  
(單糸)→합사(合糸) 또는 연사(撚糸)→면사(綿糸)」

⑤ 면직물(면포)를 제조하는 경우

「면사→정경(整經)→호부(湖付)→직조→정리→면직물」

⑥ 마니라 판지를 제조하는 경우

「조성(휴지, 팔프를 용해시키는 작업)→초지(와이어에  
의한 초지)→건조→완성→판지」

⑦ 재생고무를 제조하는 경우

「폐고무→선별→분쇄→악물배합→탈유(脫硫)→재생→포장  
→재생고무」

⑧ 리사지 < 별명 일산화연(一酸化鉛), 금밀타(金密陀) 황색  
산화연 > 연분식(鉛粉式)

「납→용융→성형→연분→산화→분쇄→리사지」

⑨ 벽돌을 제조하는 경우

「점토, 규사, 골재→배합→성형→소성(燒成)→벽돌」

7) 종업원 수(從業員數)

가) 사업주 및 무급 가족 종사자

사업체의 소유주(출자자 포함)와 그 가족(동거자 포함)

으로서 사업체의 운영을 위해서 사무나 업무에 주당 24시간 이상 종사한 자이며, 일정한 봉급이나 임금을 받지 않는 자를 말한다. 그러나 명의만으로만 사업주이고 1주일에 24시간 이상을 취업치 않는 자는 여기에서 제외한다.

나) 피고용자(被雇傭者)

- ① 피고용자라 함은 일정한 산출기준에 의하여 임금이나 급료(賃金, 給料) 또는 이에 준하는 형식의 급여를 받는 종업원을 말한다.
- ② 피고용자에는 상용(常用), 임시 및 일고(日雇) 종업원 및 병가자, 사고로 인한 단기휴가자와 파업중인자도 포함한다. 그러나 장기 결근자(3개월 이상) 및 군복무자는 제외한다. 또한 위탁계조를 시킨 경우 수탁(受託) 사업체의 종업원을 포함시켜서는 안된다.

(1) 생산종업원

생산에 직결되는 현장 작업에 종사하는 자 또는 이와 같은 생산의 보조작업(補助作業)에 종사하는 자와 자가 생산 종업원을 말한다. 그러나 현장에 종사하며라도 실제로 육체적 작업을 하지 않는 사무원, 지배인, 중역 등은 여기에서 제외한다.

광업의 경우: 채광, 굴진(掘進),坑내지주(坑内支柱), 권양(捲揚), 환기, 배수, 천공(穿孔), 발파, 분쇄, 선광, 검사, 저장, 출하, 보전수리와 자가용품의 생산부분 및 생산과정의 기록사무, 기타 상기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종업원을 말한다.

제조업의 경우: 제조, 가공, 검사, 검량(檢量), 입하(入荷), 저장, 조작, 포장, 입고, 출고, 보수(補修)와 보존적인 생산품의 생산업무, 생산업무의 기록사무 등 기타 상공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생산종업원이라 한다.

(2) 사무 및 기타 종업원

생산종업원 이외의 모든 피고용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생산작업에 직접 관여하지 않고 뒤에서 기술적, 전문적, 서기적(書記的)인 업무에 종사하는 자와 이들의 보조원 즉, 급사, 수위, 승용차의 운전사, 판매 및 선전을 위한 자동차의 운전사등을 말하며 법인에게 있어서 보수를 받는 지배인 중역등을 여기에 포함한다.

다) 3, 6, 9월말 종업원수는 남, 여 구분없이 포함기입하고 12월말 사업주 및 무급가족 종사자와 피용자는 남녀별로 구분하여 숫자를 기록한다.

8) 월별조업일수(月別操業日數)

가) 1974년 매월별로 그 월(月)의 조업한 일수(日數)를 기입한다.

나) 조업일(操業日)이라 함은 그 사업체의 본태의 생산이나 수리, 가공을 위하여 실제로 작업한 날을 말하며 휴업중이 아니더라도 기계고장, 정전등으로 실제로 작업을 하지 않는 날은 제외하여야 한다.

다) 또한 광업이나 제조업 이외의 다른 사업을 겸營(兼營)하는 경우(예, 상업·농업), 이들에 관련된 산업활동만을 하였으면 조업일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9) 연간급여액(年間給与額)

가) 1974년 간에 정기 또는 부정기(不定期)를 불문하고 생산종업원과 사무 및 기타 종업원에게 업무의 대가로 지급되는 모든 급여 즉 임금, 봉급, 상여금(賞與金), 각종수당, 생계보조금 등을 말하며 현금급여 이외에 현물(現物)로 지급된 것도 포함한다.

나) 퇴직자에 대한 퇴직금과 장기 결근자 및 군복무자에 대한 급여액은 제외한다.

다) 1974년 이전의 급여로서 체불(滯払)된 것을 1974년에 지급한 것은 제외하며 1974년 중에 지급하여야 할 것을 지불치 못했을 경우의 미불액(未払額)은 포함한다.

라) 급여액은 세금, 저금, 근로조합비 등을 공제하기 이전의 금액으로 기입한다. 현물로 지급한 것에 대하여는 지급현물이 자생상품일 때에는 지급시의 공장인도 가격으로, 구입품일 때에는 구입가격으로 환산하여 기입한다.

## 10) 연간 출하액 및 기타 수입액

1974 년간의 완제품 출하액, 폐품(廢品) 출하액, 수탁 제조 및 수리수입액을 말하며, 1974 년간에 일어난 출하 및 수탁제조 또는 수리에 대한 미수금도 포함하여 기입한다.

### 가) 완제품 출하액(完製品出荷額)

(1) 그 사업체에서 직접 생산한 완제품과 원재료를 타사업체에 공급하여 위탁제조한 완제품 중에서 1974 년간에 판매한 것을 말한다.

※ 위탁판매, 직접판매 또는 현금판매, 의상판매를 불문하고 전부 포함된다.

(2) 동일 기업내의 타 사업체에 무상으로 양도한 것과 전본 또는 선물용으로 증정한 것 및 사무용이나 종업원 급여용으로 그 사업체에서 직접 소비한 것도 환산 평가하여 포함한다.

그러나 본사에서 제품판매를 주관하는 경우에 본사로 반출된 제품에 대하여는 본사에 조회하여 출하된 것만을 계상한다.

(3) 구입한 상품에 아무런 가공도 하지 않고 그대로 판매(販売)한 것은 여기에서 제외한다.

(4) 금액은 공장 인도가격, 광산품은 최근 역도(驛渡) 가격으로 평가하며 내국소비세(內國消費稅)가 부과(賦課)되는 품목들에 대하여는 이들을 포함한 가격에 의한다.

※ 사업체에 따라서는 공장인도 가격에 이 내국 소비세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 조사원은 이점을 유의하여 반드시 포함여부를 확인하여 누락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5) 부산물로서 품목별로 출하액을 조사할 수 있는 경우는 품목별 출하액란에 기입한다.

(6) 외국에 수출된 제품으로 외화로 판매 계약된 것은 계약 당시의 외환시세에 의하여 원화로 환산기입한다.

(7) 완제품 출하액은 13 항의 (가) 품목별 완제품 출하액 합계와 일치하여야 한다.

나) 폐품판매액 (廢品販売額)

제품의 생산과정에서 생기는 폐품, 예를 들면 방직공장의 설사(屑糸), 공장이나 인쇄소에서 나오는 폐지(廢紙), 불합격품( 불량품) 등을 판매하여 수입한 금액을 기입한다. 본항목의 폐품은 제품의 생산과정 이외에서 나오는 폐물 즉 파손된 기계 부속품, 사용불능인 채상, 사무용품 등과 혼동하여서는 안된다.

다) 위탁제조 및 수리 수입액 (受託製造 및 修理收入額)

(1) 원재료 또는 중간제품을 타사업체로부터 지급 받아 제조 또는 가공처리하여 준 대가나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물품을 수리하여 준 대가로 받았거나 받아야 할 대금을 기입한다.

그러나 광공업이나 제조업이 아닌 다른 산업의 사업체(상업, 서어비스업, 건설업)나 정부 및 공공단체로부터 제품생산을 위탁 받아 위탁제조하는 경우에는 수탁업자

자신이 원재료를 구입하여 생산출하한 것으로 간주하여 조사한다.

- (2) 보통 가공업(加工業)이라고 불리는 업종에 속하는 사업체에서 자기소유의 원재료나 중간제품에 가공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체의 제품이 되는 것이므로 이들에 대하여는 위의 가) 완제품출하액에 제상한다.

#### 11) 연간 주요생산비 (인건비 제외)

1974 년간에 생산을 위하여 사용(소비)한 여러가지 비용중에서 인건비를 제외한 주요 생산비를 원재료비, 연료비, 구입전력비, 구입용수비, 위탁생산비, 수리 및 유지비등으로 구분 조사한다.

##### 가) 원재료비(原材料費)

제품의 생산 또는 수리가공을 위하여 1974 년간에 실제로 사용한 원재료, 부분품, 용기(容器) 등과 화학약품, 포장재료비와 같은 보조재료의 사용금액을 말한다.

- (1) 자기 원재료를 공급하고 위탁생산을 시킨 경우에는 제공한 원재료비를 포함한다.
- (2) 동일 기업체의 타사업체로부터 무상(無償)으로 받은 원재료와 농업, 임업, 수산업, 광업 등을 겸營(兼營)하고 있는 사업체에서 자가 취득한 원재료는 사용 당시의 시가(時價)에 운임을 포함하여 조사기입한다.
- (3) 수탁생산(受託生産)을 하는 경우
- (가) 광업 및 제조업체로부터 위탁을 받아 생산을 하는 경우는

지급받은 원재료는 그 사업체의 원재료로 계상하지 않는다.

- (나) 그러나 광업이나 제조업이 아닌 다른 산업의 사업체(상업, 서어비스업, 건설업)나 정부 및 공공단체로부터 제품의 생산을 위탁받는 경우는 위의 업종이나 공공단체가 본 조사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총투입량(總投入量)을 조사하는 뜻에서 제공받은 원재료를 사용당시의 시가(時價)로 환산하여 조사 기록하여야 한다.

(이때 수탁 사업체의 생산품도 직접 출하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 (4) 이미 원재료를 사용하여 중간 제품을 생산하고 그 중간제품을 다시 사용하여 일관작업으로 최종제품을 생산할 경우에는 최초의 원재료에 대하여만 기입하고 다시 투입된 중간제품은 원재료비에 계상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중간제품도 출하액에 계상하지 않는다.

나) 연료비(燃料費)

- (1) 1974년간에 가열로(加熱炉)(난방포함) 동력 및 자가 발전용으로 사용한 연료(석탄류, 석유류, 기타연료)의 구입가격을 합산 기입한다.

- (2) 일반적으로 연료로 사용되는 품목이라도 그 사업체에서 원재료로 사용되는 경우는 원재료비에 계상한다.

예: 연탄공장에서서 무연탄

다) 구입 전력비(購入電力費)

- (1) 1974년간에 생산을 위하여 사용한 전기요금을 말한다.



그리고 사무실 용의 전등요금도 포함시켜 조사하며 1974 년간에 지출할 전기요금으로서 미지출(未支出)된 것도 여기에 포함한다.

(2) 자가발전에 소요된 연료비는 여기에서 제외하고 (나)의 연료비에 포함한다.

라) 구입용수비(購入用水費)

1974 년간에 사무실 용과 종업원의 음료용수를 포함한 생산에 사용된 모든 용수의 요금을 말한다.

마) 위탁생산비(委託生産費)

자기 소유의 원재료를 타사업체에 공급하여 위탁생산을 시킨 경우에 수탁사업체에 이미 지출하였거나 지출하여야 할 가공임을 말하며 운임을 포함한다.

(1) 위탁생산을 위하여 공급한 원재료의 가격은 여기에서 제외하며 (가)의 원재료비에 포함한다.

(2) 출판사에서 원고만을 주고 인쇄소에 인쇄를 시켰을 때에는 인쇄비용은 포함하나 원고를 위한 비용(原稿料)은 이 조사에서 생산비 항목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3) 수탁 사업체에서 원재료를 모두 조달하여 제조하였을 때에는 위탁 사업체는 타 사업체의 제품을 구입한 것으로 간주하여 위탁생산에 계상하지 않으며 이때 가공수리가 없이 그대로 출하한 전매품(販売品)은 그 사업체의 출하액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바) 수리 및 유지비(修理 및 維持費)

생산활동을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유형고정 자산」의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출된 제비용(諸費用)을 말한다.

여기에는 수리 및 유지에 사용한 재료, 기계의 윤활유류, 소모품, 부속품 등의 구입액이 포함되며 이는 회계상에 경비로 처리될 성질의 것을 여기에 제상한다.

(1) 공장 증축이나 기계 등의 개조로 그 자산(資産)의 성능이 높아지고 가치가 증가됨으로서 회계상 유형고정자산제정에 처리되어야 할 것은 여기에서 제외하고 14 항 유형고정자산 취득란에 포함 기입한다.

(2) 유실, 도난, 화재 및 막대한 손상으로 유형고정 자산의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여 이를 구입 대체시킨 경우는 14 항 유형고정 자산의 처분액 또는 손해액에 기입한다.

## 12) 연초, 연말 재고액

가) 연초 재고액은 1974년 1월 1일 현재로, 연말 재고액은 1974년 12월 31일 현재로 재고 대상물이 어디 있는가를 불문하고 그 사업체가 소유하는 것이면 모두 포함하고 「완제품」 「반제품 및 재공품」 그리고 「원재료 및 연료」로 구분하여 기입한다.

나) 완제품의 출하를 본사(본점)가 직접 주관하는 경우에 본사로 반출된 제품으로서 출하되지 않고 본사(본점)에 재고로 남아 있는 것은 그 사업체의 재고로 보아 여기에 포함한다.

(본사 조사표 Ⅱ 참조)

다) 금액은 장부가격에 의한다. 그러나 장부가 없는 경우 각각 연초(年初), 연말의 시가(時價)에 의한 추정액을 기입한다.

라) 수탁가공을 위하여 타사업체로부터 지급받은 원재료 및 중간제품의 재고와 이미 판매대금까지 받았으나 아직 출고치 않은 미출고분은 제외한다.

마) 여기에서의 완제품 연말재고액은 다음 13 항목의 품목별 완제품 연말재고액 합계와 일치하여야 한다.

13) 연간 완제품 출하 및 연초, 연말 재고액의 품목별 내역

가) 여기에서는 조사항목번호 「10-(가)」 완제품 출하액과 「12-①-(가), (나)」의 연초, 연말 완제품 재고액에 일괄적으로 기입된 총금액을, 다시 품목별로 수량과 금액을 기록한다.

나) 따라서 품목별 완제품 출하액과 합계는 「10-(가)」와 품목별 완제품 연초, 연말재고액 합계는 「12-①-(가), (나)」와 각각 일치한다.

다) 품목별 기입에 있어서는, 그 업체에서 생산되는 모든 제품을 부록 「산업분류 및 품목분류표」를 참조하여 품목분류에서 지정하고 있는 품목명칭과 수량, 단위에 의하여 기입한다.

사업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수량 단위가 이 표에서 지정된 단위와 다를 때에는 반드시 지정된 단위로 환산하여 기입한다.

라) 각항의 분류번호 역시 품목분류표를 참조하여 지정된 번호를 조사원이 직접 기입한다.

마) 여러가지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체에 있어서는 출하액으로 보아 큰 것부터 차례로 기입한다.

바) 만약 그 사업체의 제품이 부록의 「품목분류표」에 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어디에 분류할 것인가 명백하지 않을 때에는 그 사업체에서 사용하는 품목명칭과 수량 단위에 의하여 기입한다. 이때에는 구분이 힘든 품목명칭, 수량 단위, 원재료 및 사용용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적요란에 기입하여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서 후에 조사본부에서 그 조사표를 심사할 때에 그들 품목을 적절히 분류할 수 있는 것이다.

#### 14) 유형고정자산의 연간신규취득액 (연간중고취득액) 및 연간처분 및 손해액

가) 유형고정자산(有形固定資産)이라 함은 토지(土地)와 1년 이상의 내구성(耐久性) 있는 건물 및 구축물(構築物), 기계기구 및 장치(裝置), 차량, 선박, 운반구(運搬具) 등을 말하며 영업권, 특허권, 지상권, 광업권 등의 무형고정자산은 제외한다.

##### (1) 토지

공장 및 사무소의 대지(垆地), 사택대지(社宅垆地), 운동장 등을 말하며 이를 위한 토지 개량비(정지, 매축(埋築) 등의 공사비 및 수익자부담금) 등도 포함한다.

그러나 부동산 투자를 위한 토지는 제외한다.

##### (2) 건물 및 구축물

건물은 공장, 사무소, 사택, 기숙사, 기타 부속 건물과 승강기

(昇降機), 냉방장치, 조명장치, 통풍장치 등과 이들의 부속시설을 말하며

구축물은 도로, 철도, 교량, 담장, 연돌(煙突), 수조탱크(水槽) 조선대(造船台), 송유관, 우물, 조원(造圓) 등을 말한다.

(3) 기계기구 및 장치(내용공구(耐用工具) 및 기구집기 포함)

동력기계 제조 또는 가공기계와 반사로(反射炉), 가열로(加熱炉), 용광로(熔礦炉), 분류탑(分溜塔), 및 전도장치(伝導装置) 등을 포함한다.

여기에 내용공구(耐用工具) 및 기구, 집기가 포함되는데 집기란 내용 연수 1년이상이고 1만원이상의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한다.

(4) 차량, 선박 및 운반구

자동차, 철도차량 등의 육상운반구와 전마선(伝馬船), 화물선, 유조선(油槽船) 등의 해상 운반구와 항공기를 말한다.

나) 연간 취득액

연간 취득액이라 함은 1974 년간에 유형고정자산을 실질적으로 취득, 설치 및 증개축(増改築)하기 위하여 지출된 모든 비용을 말한다.

(1) 신규 취득액(新規取得額)

한번도 사용한 적이 없는 유형고정자산의 취득, 설치 그리고 증, 개축을 위하여 연간 지출된 총비용을 말한다. (외국으로부터 직접 수입한 중고품은 신규취득으로 간주하여 포함한다)

(2) 중고 취득액

신규취득 이외의 중고자산 취득액을 말한다.

### (3) 평가(評價) 방법

구입한 것에 대하여는 설치비(設置費)를 포함한 구입가격으로, 동일기업내의 다른 사업체로부터의 양수(讓受)분은 양수시의 평가액으로, 그리고 자가건설 또는 생산의 경우에는 그것을 완성하였을 때의 건설 또는 생산가액으로 기록한다.

자산 재평가에 의하여 장부가격이 명목상으로만 증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 다) 연간 처분액 및 손해액

1974 년간에 매각(売却), 양도(讓渡), 재해(災害), 도난 등으로 인한 유형고정자산의 실질적인 가치감소액을 말하며 감가상각에 의한 장부가격의 감소는 제외한다.

#### (1) 평가방법

처분액의 평가는 재산의 매각액으로 하고, 실제 매매가 없었을 때에는 가치 감소요인의 발생당시에 매각할 수 있었던 시가(時價)에 의한다.

### 15) 건설가계정

가) 건설가계정은 건설중의 유형고정자산의 건설을 위한 투자지출이나 건설을 위하여 투입 총당원 재료 및 기계설비등의 매입을 위하여 지출되었으나 아직 현품이 도착하지 아니하였을 때의 완성, 도착에 이르기까지 잠정적으로 처리하는 계정으로서 건설의 목적물인 고정자산이 완성되거나 기계설비 등이 입수되었을 경우에는 해당계정으로 처리 말소되는 계정이다.

#### 나) 건설가계정 연간증가

1974년 1월 1일부터 1974년 12월 31일 사이에 건설가계정의 차변에 기록된 금액의 합계액을 기록한다.

다) 건설가계정 연간감소

1974년 1월 1일부터 1974년 12월 31일 사이에 건설가계정에서 고정자산계정으로 대체된 금액의 합계액을 기재한다.

라) 건설가계정 연간증감

건설가계정 연간증가에서 건설가계정 연간감소를 차감한 금액을 기입한다. 연간증가액이 연간 감소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연간증감액 앞에 △표시를 한다.

마) 건설가계정은 연도별 자본형성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연간증감액을 조사하는 것이므로 건설가계정의 연말잔액을 조사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바) 금액은 장부가격에 의한다.

16) 조사표 작성 근거

가) 조사결과와 신빙도를 검토하고 우리나라의 장부조직의 발전도를 측정함으로써 앞으로 있을 유사한 조사의 참고자료를 얻기 위한 것이다.

적 요

가) 품목분류를 결정하기 어려운 품목명에 대해서는 사업체에 자세한 설명을 부탁하여 기입한다.

나) 사업체에서 사용하는 단위가 지정단위와 상이한 경우 지정단위로 환산하여 기입하여야 하나 극히 환산하기 어려울 경우는 사업체 사용단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한다.

다) 이상 가), 나) 외에도 조사표 처리상 참고사항이 될만한 것은 기입한다.

#### 나. 조사표 II (본사 또는 본점용)의 기입요령

##### 일 반 사 항

- 1) 조사표(II)는 본사를 하나의 사업체로 간주하여 조사하는 것이므로 본사에 해당하는 항목에 대하여만 기입하며, 장부가 별개로 구분되어 있는 여러개의 산하사업체와 통합되어 있는 경우는 분리하여 기입한다.
- 2) 산하사업체가 2개 이상 있고 그중 1개 사업체가 본사와 함께 있는 경우는 본사 조사표의 관한사업체 명부란만 기입하고 기타사항은 함께 있는 사업체 조사시 조사표(I)에 기입한다.
- 3) 각 항목별 용어의 정의는 조사표(I)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 기 입 요 령

- 1) 본사명 및 소재지 : 조사표(I)의 제2항과 동일
- 2) 창설년월일 : 조사표(I)의 제3항과 동일



3) 조직 형태 : 조사표 ( I ) 의 제 4 항과 동일

4) 자본금 또는 출자금액 : 조사표 ( I ) 의 제 5 항과 동일

5) 종업원수 및 연간 급여액

가) 종업원수

종업원수중 피고용자수는 본사의 사무 및 기타종업원을 말하는 것이므로 기업체 전체의 종업원수를 기입하여서는 안되며 기타의 기입요령은 조사표 ( I ) 의 제 7 항과 동일하다.

나) 연간급여액

본사 ( 본점 ) 의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용자에게 1974 년간 노무의 대가로 지급한 총액으로서 기입요령은 조사표 ( I ) 의 제 9 항과 동일하다.

6) 원재료 및 연료 개고액

가) 본사계정에 속하는 원재료 및 연료의 연초·연말 재고액을 기입한다.

나) 금액은 장부가격에 의하나 이에 의하기 어려울 때에는 각각 연초·연말 현재 시가로 평가한다.

7) 유형고정자산

가) 유형고정자산은 본사계정에 속하는 유형고정자산에 한한다.

나) 본사와 분리된 사업체 ( 공장 ) 의 증축·개축 등의 유형고정자산 취득과 처분 등은 그 사업체의 것으로 분리하여 이 항목에서 제외한다.

다) 유형고정자산의 정의 및 기타 기입요령은 조사표(Ⅱ)의 제 14항과 동일하다.

8) 건설가계정 : 조사표(Ⅰ)의 제 15항과 동일

9) 조사표 작성근거

가) 조사결과와 신빙도를 검토하고 우리나라의 장부조직의 발전도를 측정함으로써 앞으로 있을 유사한 조사의 참고자료를 얻기 위한 것이다.

10) 관할사업체 명부

가) 경영주체가 동일한 기업체에 소속된 모든 산하(傘下)사업체를 기입한다.

나) 산하사업체 2개이상 있고 그중 1개 사업체가 본사와 함께 있는 경우는 본사와 분리된 사업체에 대하여만 기입한다.

다) 산하사업체가 모두 본사와 함께 있는 경우에는 조사표(Ⅱ)는 조사하지 않는다.

라) 광공업 또는 광공업과 비광공업과의 겸업인 경우에는 주요 생산 품명란에 주요 생산품명을 기입하며 기타의 경우에는 주요 생산품란에 해당 경제 활동의 내용을 기입한다.

## Ⅳ 조사표검토정리요령

## IV. 조사표 검토 정리요령

### 1. 항목별 검토정리 요령

- 1) 조사표가 '오손(汚損) 되었을 때에는 타 조사표에 옮겨 다시 작성한다.
- 2) 조사표상의 숫자 기록이 정확한가를 검정한다.
- 3) 조사구별로 철해진 조사표가 조사표 표지상에 기재되어 있는 매수와 일치하는 가를 확인한다.
- 4) 사업체 명부상 조사표번호 = 요계표 번호 = 조사표상 조사표 번호가 일치하는가 확인한다.
- 5) 사업체명부상 명부기입요령에 의거 정리되었는가를 확인한다.
- 6) 사업체명을 생략 또는 간단히 줄여서 기입하지 않았는가를 검토하고, 특히 소재지는 행정구역 단위가 명백히 구별(○표)되었는가를 확인한다.  
※ 사업체 명부와 동일하여야 한다.
- 7) 자본금, 출자금액은 주식회사와 기타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 8) 주생산품명이 "완제 품출하의 품목별 내역중" 출하액이 가장 큰 품목명과 일치하는 가를 검토한다.
- 9) 사무 및 기타 종업원에는 사업주 및 무급 가족종사자를 잘못 포함시키기 쉬우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 10) 개인 기업체일 경우에는 사업주 또는 무급가족종사자가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 11) 급여액은 종업원의 현실적인 급여 수준에 미달되어서는 안되므로 1인당 월간 급여액을 계산(概算)하여 합리성 여부를 검토

한다.

- 12) 위탁생산의 경우에는 원재료가 미소하게 계상된다. 그러나 위탁사업체가 광공업 사업체가 아닌 경우는 원재료를 구입하고 제품을 출하(시장가격)한 것으로 간주한다.
- 13) 원재료비란은 완제품 출하액의 품목별 내역을 참조하여 계상되지 않은 원재료비가 있는가를 점검하고 자가생산한 중간제품의 자가 사용분이 원재료비에 이중 계산되지 않았는가를 점검한다.
- 14) 연료비는 물가표를 참조하여 업종과 규모를 감안하여 금액을 검토한다.
- 15) 구입전력비와 구입용수비는 업종과 규모를 감안하여 금액의 타당성을 고려하여 전동기의 능력을 감안한다.
- 16) 위탁생산비는 업종과 규모 및 출하액에 의하여 그 합리성을 검토한다.
- 17) (가) 「연간 주요생산경비」의 항목별 검토가 끝나면 합계액을  
검산하고  
(나) 주요 생산비와 급여액 총계는(연말재고액 합계 -연초재고액 합계 +연간출하액 및 기타 수입액)보다 반드시 적어야 한다.
- 18) 제품 판매액은 업종과 규모에 따라서 완제품 출하액과 비교하며 합리성을 검토한다.
- 19) 연간완제품 출하액의 품목별 내역은 「분류번호, 품목별, 단위」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단위가 틀린 경우에는 환산 기입한다. 수량과 금액을 비교하여 단위당 가격이 합리적인가를 가격표를 참고하여 점검하여야 한다.
- 20) 다음 금액의 일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0 항 (가) 완제품출하액 - 13 항 (가) 품목별 완제품출하액

12 항 ①, (가), (나) 완제품재고액 - 13 항 (가)(나) 품목별 완제품재고액

21) 유형고정자산에는 부동산 투자를 위한 유형고정자산과 생산활동에 공여치 않은 개인 소유의 유형고정자산의 투자 및 처분액은 포함시켜서는 안된다.

## 2. 산업별 문제점 및 유의사항

### 2.1. 일반적인 사항

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품목도 품목 분류표에 의하여 다시 검토하여 상세히 조사하도록 한다.

나. 계절에 따라 생산품이 다른 사업체에 대하여는 「품목 분류표」를 면밀히 검토하여 누락됨이 없도록 한다.

동일 명칭의 품목이라도 규격에 따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것은 품목명 옆에 ( ) 하여 광업은 품위를, 화학제품은 농도를 기입해야 하며 공란이 없는 경우에는 조사표 후면 적요란에 규격과 금액을 참고로 기입하여야 한다.

다. 그 사업체에서 생산한 제품을 다른 제품의 생산을 위하여 다시 소비했을 경우는 출하액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이때에는 원재료비에 이중 계산되는 경우가 있으니 유의하여 실제 비용이 계상되도록 문의하여 처리한다.

라. 유고사업체는 실사진도보고를 이용하여 시도 통제과에 년, 월, 일 및 유고 사유를 보고하고 휴업중이어서 조사할 수 없는 경우에도 조사대상이 되면 반드시 품목번호, 품목명, 단위를 기록 보고하여야 한다.

## 2.2 소분류별 문제점 및 유의사항

### 가. 광업

#### 1) 소분류 210 (석탄광업)

석탄광업은 무연탄 및 갈탄의 채굴에 종사하는 산업을 말하는데 연탄(3540101)을 여기에 분류하는 사례가 많음.

연탄제조사업체에서 품목을 "무연탄"으로 기록한 경우일지라도 석탄광업에 분류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 2) 소분류 230 (금속광업)

가) 조사표상의 조사항목 13 (연간 완제품 출하 및 연초, 연말 재고액의 품목별 내역)란에는 광석의 품목명을 기재한 후 팔호하여 품위를 기입한다. 품위는 해당 광석에 포함되어 있는 금속, 혹은 비금속의 함유량(%로 표시)을 말하며, 표시하기 곤란한 것은 각 광업소에서 판매할 당시의 표준이 된 품위를 기입하면 된다.

나) 혼합광석의 경우에는 함유량이 가장 많은 것에 분류하여 조사한다. (이 경우도 순도 또는 함유량을 팔호안에 기록한다)

다) 금광, 은광 사업체는 금광석, 은광석과 금괴, 은괴를 출하한 때를 기준으로 구분하여 조사한다.

라) 품목명 분류시 주의를 요하는 품목

(1) 산화철은 적철광석에 포함하여 조사한다.

(2) 분철은 자철광석에 포함하여 조사한다. 동일한 명칭의 품목(분철(철가루))이 3710905에 분류되고 있으나 사업체의 성질에 의하여 분류하여야 한다.

(3) 철광석은 자철광석과 적철광석으로 명백히 구분하여 조사한다.

(4) 흑연은 인상흑연과 토상흑연으로 명백히 구분하여 조사한다.

(5) 취수연은 모리브데늄에 포함하여 조사한다.

### 3) 소분류 290 (비금속 광업)

가) 대리석 조사시에 대리석의 채굴은 여기서 조사하나 채굴된 대리석을 가공하여 건축자재 등을 만드는 경우는 3699304 (대리석 및 돌조각품)에 분류한다.

나) 석회석 조사시에 자체 생산한 석회석으로 일관작업으로 시멘트를 제조하였을 경우에는 투입된 부분은 본 조사에서는 생산비중 원재료바로 조사되어야 한다.

다) 백토는 고령토에 포함되어야 한다.

라) 석면 암석을 채굴하거나 채굴된 암석을 부드리고 펴고 세척하는 것까지는 2909901에 분류하나 이것을 가공하여 봉상, 띠상 등의 제품을 만든 것은 3699601에 분류한다.

### 나. 제조업

#### 1) 소분류 311~312 (식료품 제조업)

가) 해산물 통조림의 단위를 관(can) 또는 상자(C/S)로 기입하여서는 안되며 반드시 kg으로 기입하여야 한다. 또한 농산물 통조림을 포함시켜서는 안된다.

나) 도정업은 일반적으로 수수료를 받고 도정하여 주는 형태를 취함으로써 품목란은 기입하지 않고 수입수수료를 \*수탁제조 및 수리수입액\*란(10-다)에 기입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때 벼, 보리 등을 구입하여 도정한 경우에도 도정료만 기록하여야 한다.



다) 제분업에는 관수용, 민수용을 불문하고 모두 포함 조사한다.  
제분업의 부산물이 「사료」로 기록되어 있을지라도 조제된  
것이 아닐 때에는 3116299 ( 각종 가루 부산물 ) 에 분류하고,  
조제된 배합사료는 3122001 에 분류한다.

라) 빼다빵, 안꼬빵 등도 식빵으로 간주하여 조사한다.

마) 중국음식점 등에서 사용하는 춘장은 된장이나 고추장에 포  
함시키지 말고 3121299 ( 기타의 장류 ) 에 포함시켜야 한다.

바) 조미료 및 인공감미료 제조업 ( 31213 ) 에는 소오스, 식초,  
구루타민 산소다 등만 포함하고 사카린은 3511905 에, 돌친은  
3511915 에 분류한다.

사) 식빵, 건빵, 사탕, 과자류 등을 「관」 또는 「봉지」로 조  
사하는 사례가 많으나 지정단위가 kg임을 명심하고 반드시  
kg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아) 옛의 단위는 kg이다. 불엿 역시 kg으로 환산조사 한다.

## 2) 소분류 313 ( 음료품 제조업 )

가) 알콜 1% 이상 함유한 음료품은 주류에 분류하고 알콜을  
1% 이하 함유하거나 함유하지 않은 음료품은 청량음료에  
분류한다.

나) 소주와 탁주의 경우 사업체가 통합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통  
합되는 사업체와 남아 있는 사업체 ( 현재 생산하는 사업체 )  
를 구분하여 조사하여야 하며 합동관리위원회에서 조사된 것  
이 사업체에서 이중으로 조사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다) 탁주 생산업체에서 약주를 생산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혼합

하여 조사하거나 어느 한 품목을 누락시키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라) 주정, 소주, 탁주, 청주, 사이다, 콜라 등 지정단위는 ℓ임으  
로 “되” 또는 “병”으로 응답한 경우에는 ℓ로 환산하여야  
한다.

$$1 \text{되} = 1.8 \text{ℓ}$$

$$1 \text{ℓ} = 0.556 \text{되}$$

마) 환타, 오란 C 등의 청량음료는 주우스에 포함하여 조사  
한다.

바) 동일 품목으로서 품질규격이 크게 차이나지 않는 것은 합  
산하여 다음 “○”표와 같이 기입한다.

품 목 번 호	품 목 명	규 격	단 위	생 산 량
3131201	소 주	25°	ℓ	200
3131201		30°	ℓ	300
3131201 ○	소 주	25°~30°	ℓ	500

3) 소분류 321 (섬유제조업)

가) 섬유분류

방직	천	식물성 섬유	종자모섬유 - 목화	
			鞣皮 " - 아마, 저마, 대마	
			엽맥 " - 말레지아삼, 사이잘삼	
			과실 " - 야자, 수세미	
방직	천	동물성 섬유	수사 - 양모, 염소털 (모헤어, 카시미아) 낙타털, 토끼털등	
			잠사 - 가잠견사, 작잠사, 천잠사등	
			잠섬유 - 羽毛	
			광물성 섬유 { 석면	
섬유	화학섬유 또는 인조 섬유	재생 섬유 (펄프)	비스코스 레이온 (Viscos Rayon)	
			스프사 (Staple Fiber)	
			큐프라 레이온 (Cuprammonium Rayon)	
			牛乳蛋白質 섬유 (Fibrolane)	
섬유	화학섬유 또는 인조 섬유	반합성 섬유 (펄프)	아세테이트 레이온 (Acetate Rayon)	
			합성 섬유 (석유화학)	Polyamide fiber - 나이론
				Polyester fiber - 테레렌 데드론
				Polyvinyl alcohol fiber - 미쿠론 비닐
Polyacrylic fiber - 액스란 개시미론				
섬유	화학섬유 또는 인조 섬유	합성 섬유 (석유화학)	Poly propylene fiber - 파이론 오프론	
			Polyethylene fiber - 玩具, 포장지, 필름 어망사, 건축재등	

나) 섬유와 통일명칭

섬유의 종류	통일명칭	
	국문	영문
면 (綿)	면	Cotton
모 (毛)	모	Wool
견 (絹)	견	Silk
마 (아마 및 저마)	마	Linen & Ramie
비스코스섬유	인견, 비스코스	Viscose
동(銅) 암모니아섬유	큐프라	Cuprammonium
아세트이트 섬유	아세트이트	Acetate
나일론 섬유	나일론	Nylon
폴리비닐 알콜계 섬유	피, 브이, 에이	P. V. A.
폴리 염화비닐계 섬유	피, 브이, 씨	P. V. C.
폴리 염화비니리덴계 섬유	염화 비니리덴	Vinyliden Chloride
폴리아크리 로니트릴계 섬유	아 크 릴	Polyacryl
폴리에스테르계 섬유	폴리에스테르	Polyester
폴리프로피렌계 섬유	폴리프로피렌	Polypropylene
폴리청화 비니리덴계 섬유	청화 비니리덴	Polyvinylidene
폴리우레탄계 섬유	폴리우레탄	Polyurethane

비고 : 기타 섬유 명칭을 표시할 때는 학명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혼방사 및 혼방직물의 기준량·비율(교직포함)

(1) 면과 타섬유의 혼방

(가) 면과 일종의 타화섬과 혼방일 경우 기준비율은 50 : 50으로 하되 동률일 경우에는 혼방된 화섬명칭을 우선적으로 호칭한다. (합섬, 아세테이트, 면, 비스코스 순)

(나) 면과 이종이상의 타섬유와 혼방일 경우 중량비율이 가장 큰 섬유명을 우선적으로 호칭하고 동률일 때는 합성섬유, 아세테이트, 면, 비스코스순(이는 가격 수준임)에 의하여 호칭한다.

(2) 모와 타 섬유의 혼방

(가) 기준비율을 60(화섬) : 40(모)로 하고 동률일 때에는 모를 우선적으로 택한다.

(나) 모가 40% 미만일 경우로서 모와 이종이상의 타 섬유와 혼방일 경우에는 혼방비율이 가장 큰 섬유명을 우선적으로 택하고 동률일 때에는 모, 합성섬유, 아세테이트, 비스코스 순에 따라 호칭한다.

(3) 견과 타 섬유의 혼방

(가) 기준 중량 비율을 30(견) : 70(화섬)으로 하고 동률일 때 견을 택한다.

(나) 견이 30% 미만인 경우에 견과 이종이상의 타화학섬유와 혼방일 경우에는 중량비율이 가장 큰 것을 택한다.

(다) 견과 모의 기준 혼방 비율은 40(견) : 60(모)으로 하고 동률일 때는 견을 택한다.

(4) 이종의 화섬혼방

동분률 이상을 점한 섬유명을 택하되 동률일 경우에는 합성섬유, 아세테이트, 리스코스 순으로 호칭한다.

라) 면사 생산업체

경 방 (영 등포)	동일방직 (인천, 안양)
전 방 (광 주)	한일방직 (안천)
합동방직 (대구, 대전)	대한방직 (수원, 대구)
충남방직 (천 안)	대농방직 (안양, 청주, 대구)
풍산산업 (대 전)	일신방직 (광주)
방림방직 (영 등포)	국제방직 (마산) < 75년 가동예정 >
윤성방직 (구 미)	영남방직 (대구) "
삼화방직 (부 산)	영화방직 (철성) "

마) 항목별 유의사항

- (1) 면혼방사는 면사에 포함한다.
- (2) 화학섬유 방직사는 ( 32164 -03 , -04 , -05 , -06 , -07 , -08 ) 일체의 화학섬유를 방직할 수 있도록 제 공 정을 완료한 사(※)의 상태의 것을 말하는 것으로 각종 화학섬유 ( 35133 ) 와 혼돈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3) 각종 직물의 단위도  $m^2$ 임으로 필, 마 등으로 조사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4) 각종 세복직물 ( 3217501 ) 은 사용 원재료를 가리지 않고 폭 13cm 미만 직물을 전부 포함한다.
- (5) 표백, 염색 및 정리업 ( 32180 ) 은 일반적으로 수수료를 받고 섬유, 직물등의 표백, 염색, 나염 및 기타 가공에 주

로 종사하는 산업으로서 출하품목은 기록하지 않고 수입 수  
수료를 수탁제조 및 수리수입액 기록하는 것이 원칙이다.

단, 롤치기 제품을 만든 경우에는 품목 표시를 한다.

개인을 상대로 하는 표백 및 염색업은 제조업에서 제외하  
다. ( 9520 에 분류)

(6) 갈포벽지는 지정단위가  $m^2$ 인데 사업체에서 1 Roll 로 응답  
하면,  $1 \text{ Roll} = 6.6885 m^2$  으로 환산한다.

#### 4) 소분류 322 (의복제조업)

가) 편직 공장에서 일관작업으로 내의, 장갑, 양말 등을 제조하는  
산업은 3213 (편직업) 에 분류하고 의복의 수선은 제조업에서  
제외한다.

( 9520 에 분류) 다음의 산업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한다.

메리야스제 내의 편조업 : 32133

편직물 장갑 제조업 : 32132

고무 장갑 제조업 : 355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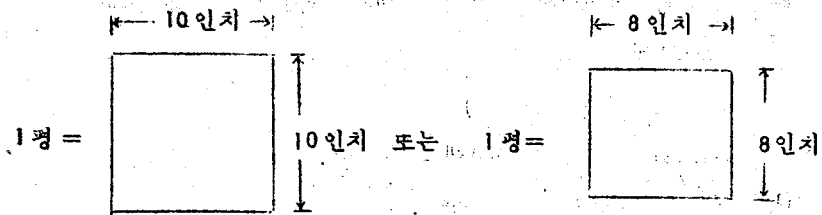
메리야스제 모자 : 32134

#### 5) 소분류 323 (가죽, 가죽대용품 및 털, 가죽제품 제조업)

가) 소가죽은 제조과정에 따라 복수혁, 다리혁, 이혁, 저혁으로  
분류되나 이것을 모두 포함하여 단일품목으로 조사한다.

나) 사업체에서 소가죽의 단위를 「평」 또는 「매」로 하여  
생산량을 보고하는 경우가 많으나 지정단위는  $m^2$ 임으로 지정  
단위로 환산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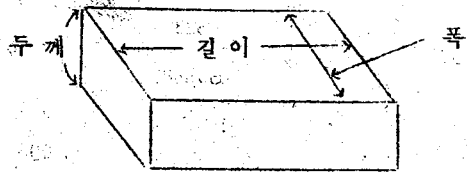
※ 단위환산법 (가죽의 경우 "평"은 보통 사용하는 "평"의 크기와는 다르다)



- ① 사방 10 인치인 경우 =  $0.0645 m^2$       ② 사방 8 인치인 경우  
 1 매 = 30 ~ 40 평      =  $0.0413 m^2$   
 1 매 =  $3.7 m^2$  (40 평)      1 매 =  $3.3 m^2$  (30 평)

다) 공업용 가죽벨트의 지정단위는  $m / ply$ 이다. 그러나 많은 사업체에서 자(尺)나  $m$ 를 단위로 사용하고 있다. 이 경우에는 사업체에 문의하여  $m / ply$ 로 환산 기록하여야 한다.

Ply의 규격 : 길이 1자, 폭 1인치, 두께 1.4 mm  
 $m / Ply$ 의 규격 : 길이 1m, 폭 1인치, 두께 1.4 mm





라) 가죽가방 제조업에는 플라스틱제를 포함하나 직물제가방은 32121에 분류한다.

6) 소분류 324 (가죽신제조업)

가) 플라스틱제 신은 35600에 분류한다.

나) 고무신은 35591에 분류한다.

다) 나무제신은 33199에 분류한다.

7) 소분류 331 (제재, 폴크 및 나무제조업)

이 산업에 속하는 각재, 판재, 합판, 하드보드등 모든 제품의 지정단위는  $\text{m}^2$ 인바, 아직도 才, 매, B/P, S/P 등으로 조사되는 사례가 있으니 이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지정단위인  $\text{m}^2$ 로 환산하여야 한다.

$$\text{즉, } 1\text{才} \approx 0.00334 \text{ m}^2 \quad 1 \text{ m}^2 \approx 300\text{才}$$

$$1\text{B/P} = 0.002359 \text{ m}^2 \quad 1 \text{ m}^2 \approx 423.77 \text{ B/P}$$

한 합판의 경우는 다음과 같은 요령으로 환산한다.

규격			1매당 $\text{m}^2$	좌기 두께의 1 S/P당 $\text{m}^2$
가로 (P)	세로 (P)	두께 (mm)		
4	8	3.2	0.0095232	0.0002976
3	6		0.0053568	
4	8	3.6	0.0107136	0.0003348
3	6		0.0060264	
4	8	4	0.011904	0.000372
3	6		0.006696	
4	8	6	0.017857	0.000558
3	6		0.010044	

8) 소분류 332 (가구 및 전구 제조업)

가) 철제가구 제조업은 3812 (금속가구 및 전구제조업)에 분류된다.

나) 나전철기계 공예품 제조를 전문으로 하는 산업은 390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제조업)에 분류된다.

9) 소분류 341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가) 창호지 및 벽지 (사고지)의 단위는 권이다. 그러나 한 권이 사업체에 따라 100매 또는 1,000매 일수도 있음으로 반드시 한권을 2,000매로 환산하여 기입하여야 한다.

나) 골판지의 표면과 이면에 사용되는 라이너 (K원지 또는 B원지라고 함)와 가운데 입체구조의 매체가 되는 중심원지 (S원지)는 골판지원지 (3411303)에 분류하고 이를 합하여 제품을 만들었을 때는 골판지 (3411304)에 분류한다.

다) 갈포벽지는 섬유제조업 (3219007)에 분류된다.

10) 소분류 342 (인쇄출판 및 관련업)

가) 사진복사 및 청사진업 (전자복사 포함)은 인쇄출판업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34193에 분류함)

나) 자신이 인쇄하지 않고 서적출판만 하는 사업은 완제품출하액 및 위탁생산비 (인쇄비 등)을 기록하고 이것을 인쇄한 인쇄업소에서는 수입 수수료만을 위탁제조업 수리수입액에 기입한다.

다) 인쇄소에서 자신이 출판하거나 개인 또는 관공서등 출판사 이외의 주문에 의하여 인쇄한 것은 완제품 출하액을 기입한다 (수탁 제조업에서 원재료를 모두 조달하여 출판하

였을 때는 수탁제조업체의 생산으로 보는 원칙에 따른 것이다)  
다만, 인쇄시설을 가지지 않은 출판사에서 조사된 것이(나항)  
인쇄소에서 이중으로 조사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출판사에서  
조사된 부분은 인쇄소에서 제외시키도록 한 것이다.

라) 서적 등의 제본만 하여 주는 사업은 완제품 출하액을 기록  
하지 말고 수입수수료를 수탁제조 및 수리수입액란에 기입한다.

#### 11) 소분류 351 (공업용 화학제품 제조업)

가) 황산, 염산, 질산, 인산, 가성소다는 함량이 다양하게 생산됨으  
로 사업체에 문의하여 품목명을 기재한 후 발호하여 농도를  
기입하여야 한다.

(예) 현재 국내에서 생산되는 농도는 황산(98%, 35%, 40%)  
등이 있는데 98%로 환산하여 기입한다.

염산(35%, 100%) 등이 있는데 35%로 환산 기재하고 가성  
소다는 40%, 46%, 97%, 100% 등이 있는데 100%로 환산  
기입한다.

나) 염료 및 안료는 종류가 다양하므로 분류에 특히 주의를 요  
한다.

다) 압축산소는 #으로 조사하고 사업체에서 본(本)으로 응답하  
면 #로 환산토록 하고 아세틸렌가스도 #이나 본 또는 #은  
반드시 #으로 환산 기입한다.

※ 1본 = 7#

라) 합성그리세린(3511914)과 그리세린(유지분해 부산물(3523306))  
과 혼돈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그리세린(3523306)은  
유지 분해 과정에서 생산되는 것이니 비누공장 조사시에는 그리  
세린 생산여부도 확인하여야 한다.

마) 석회질소비료 (3512104)와 석회질비료 (3512301)를 혼돈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바) 석회질비료는 소석회 (3692201)와 구별하여야 한다. 석회질비료와 소석회는 동일성질의 것이나 석회질비료가 소석회보다 더 굵은 가루임으로 출하량을 구별할 수 있다. 일단, 소석회로 제조하였을 경우에도 석회질비료로 판매하였을 때는 석회질비료로 조사한다.

사) 각종 수지는 프라스틱 재료제조업 (35131)에 속하는데 프라스틱 제품제조업 (35600)과 명칭을 혼돈하여 사용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제품의 성질, 제조공정 등을 참고하여 정확히 분류하여야 한다.

아) 화학섬유 (35133 : 세르로즈 재생섬유 및 합성섬유제조업)와 화학섬유 방적업과 혼돈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소분류 321 섬유제조업 참조).

자) 화학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는 여러 종류의 품목을 생산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조사시 누락시키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1) 유산반토 (3511807) ( $Al_2SO_4$ )를 생산하는 업체는 보편적으로 유산 (3511101)를 겸하여 생산하는 경우가 많음.

(2) 염산 (3511102)과 가성소다 (3511108)는 동일업체에서 생산하는 경우가 많음.

(3) 농약을 생산하는 업체는 겨울철에 유산, 가성소다, 염산 등을 생산하는 경우가 많음.

12) 소분류 352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가) 각종 도료는 필히 품목을 세분하여 조사하여야 하며 특히 유성페인트와 수성페인트를 구분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나) 폭약 및 탄약제조업 (35292)은 주로 산업용 폭약 및 탄약을 제조하는 산업을 분류하는 것이므로 성냥 및 화학제조업 (35293)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한다.

13) 소분류 354 (석유 및 석탄의 잡제품 제조업)

가) 각종 연탄은 (3540101) 반드시 지정단위 %로 조사하여야 한다.

예 :	19 공탄	220 개 = 1%
	22 공탄	277 개 = 1%
	31 공탄	180 개 = 1%
	49 공탄	80 개 = 1%

14) 소분류 355 (고무제품 제조업)

가) 방한화는 운동화에 포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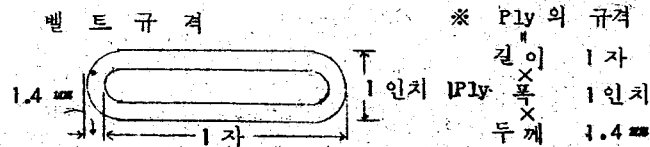
나) 털신 (고무신안에 털을 넣은 것)은 고무신에 분류한다.

다) 각종 고무벨트의 지정단위는 ply이다.

사업체에서 자 또는 m로 보고하더라도 반드시 ply로 환산하여야 한다.

$$m/Ply = 폭(幅) \times 포층수(布層數) \times 길이$$

$$1 Ply = 0.33 m/Ply$$



보통 고무벨트는 두께가 3점 (1.4 × 3) 4점, 5점으로 되어 있다. 콘베아벨트는 보통 폭이 20인치이다.

라) 고무호수의 지정단위도 m이므로 「권」으로 보고하더라도 반드시 m로 환산하여야 한다.

$$※ 1권은 50척 = 15.15 m$$

15) 소분류 356 (기타 플라스틱 제품제조업)

가) 기타 플라스틱 제품제조업 (35600)은 플라스틱을 원료로 하는 제품중 다른 산업에서 분류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다른 산업에서 분류된 것은 아래와 같다.

(1) 기타 직물제품 제조업 (32129)에 직물제품 외에 플라스틱제를 포함한다.

예: 시트 (플라스틱제 포함)

(2) 가죽가방제조업 (32332)에 가죽제품 외에 플라스틱제를 포함한다.

(3) 기타 가죽제품 제조업 (32339)에 플라스틱제를 포함한다.

예: 지갑 (플라스틱 비닐 및 합성가죽제 포함)

(4) 장난감 제조업 (39098)에 플라스틱제를 포함한다.

(5)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제품 제조업 (39099)에 비닐우산도 포함시킨다.

16) 소분류 361 (도자기 및 점토제품 제조업)

가) 애자는 고압애자 (3,300 V 이상)와 저압애자 (3,300 V 이하)로 구분하여 조사한다.

나) 콘크리트 브릭에서 보도용브릭은 제외하고 조사한다.

다) 벽돌 (소성품)에 휘장연와 (오치벽돌)를 포함한다.

17) 소분류 371 (제 1차 철강제조업)

가) 1차 금속제조업과 금속제품제조업의 구분

1차 금속제조업은 용광로에서의 제선 (製鐵)으로부터

압연공장까지와 각종 주물제조물 말하며 금속제품 제조업은 1차 금속제품을 가공조립하여 최종제품을 만드는 단계를 말한다. 단, 도금철판은 1차 철강제조업에 분류하나 도금업은 금속제품 제조업(381)에 분류한다.

나) 품목구분

(1) 강반성품: 강괴는 크고 무겁기 때문에 직접 조강(条鋼)이나 강판(鋼板) 등의 강재제품(鋼材製品)을 만들기 어려움으로 사용목적에 따라 적당한 크기와 형태로 나온 것이다. 강편(鋼片)이라고도 한다.

(2) 후판, 중판, 박판의 구분

후판: 두께 6mm 이상의 강판

중판: 두께 3.2 ~ 6mm의 강판

박판: 두께 3.2mm 이하의 강판

※ 마강판도 두께에 따라 강판에 분류한다.

(3) 가단주철: 가단주철이라 함은 가단성(可鍛性) (휘어질 수 있으나 잘 부러지지 않는)이 있는 쇠를 말하며 금속관 이음쇠, 방열기 등을 만드는 데 사용한다.

18) 소분류 372(제1차 비철금속제조업)

가) 알루미늄 주물 제조업 및 알루미늄합금제품 제조업(프레스 가공 제품 제조업(38192))을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주물제품은 알루미늄괴를 녹여 부어서 만든 것으로 보통 두꺼웁고 충격을 받으면 깨지는 것으로 양은술, 두꺼운 주전자 등이며 프레스제품은 알루미늄판을 압축하여 만든 것으로 깨지기 보다는 찌그러지는 것이다.

19) 소분류 381(금속제품 제조업)

가) 석유스토브에 석유근로를 포함시켜서는 안되며 구분 조사한다.

나) 도금업은 일반적으로 주문을 받고 도금을 하여주는 사업이므로 품목별 완제품 출하액은 기록치 않고 수탁제조 및 수리 수입액만 기록한다.

다) 농업용수공구에서는 '금속제'만 조사되며 목제농업용수공구는 제외한다.

20) 소분류 382(기계제조업)

가) 보일러는 산업용보일러(3821106)와 건물용보일러(3813003)로 구분하여 조사한다.

나) 발동기는 석유기관(3821104)에 포함 조사한다.

다) 탈곡기는 인력 탈곡기와 동력 탈곡기를 구분하여 조사한다.

라) 환관인쇄기(3824906) 음쇄인쇄기(3824907)를 엄격히 구분 조사하여야 한다.

마) 동력 펌프에는 자동식 펌프와 양수기(수리관계용)를 포함하여 조사한다.

바) 재봉틀은 가정용과 산업용을 구분하여 조사하되 재봉틀 두부를 포함하여 조사한다.

사) 피스톤(3829906) 및 피스톤링(3829911)과 자동차용 피스톤(3843206) 및 자동차용 피스톤링(3843222)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아) 기계제조업은 제품의 제조와 수리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조사한다.

21) 소분류 383(전기기계 기구 제조업)

가) 축전기는 고압축전기(3831901 단위: KVA)와 저압축전기(3831902, 단위: MF)로 구분 조사하고 통신용 축전기(3832901)(콘덴서)와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나) 라디오는 가정용, 차량용 등의 용도를 불문하고 진공관식과 트랜지스터식의 것 및 기타의 것으로 구분하여 조사하고 있으니 조사에 착오 없도록 할 것.

다) 백열전구란 일반 조명용의 백열전구(필라멘트 전구)로서 10w, 20w, 30w, 100w, 150w, 200w 등을 포함한다.

라) 축전지는 기전력이 소멸된 후 다시 충전시킬 수 있는 것으로서 전전지와 구별되는 것이니 조사에 주의를 요한다.

22) 소분류 384(수송장비 제조업)

가) 선박 수선업도 제조업(38412, 38413)으로 조사한다.

나) 선박은 지정단위가 G/T임으로 "척"등으로 조사된 것은 사업체에 문의하여 환산한다.

다) 시린더는 기차용(3842210)과 자동차용(3843221)으로 구분 조사한다.

라) 자동차스프링은 의자시트용 스프링은 제외되며 차체하부에 부착되는 스프링만 기입한다.

23) 소분류 390(기타 제조업)

가) 연필단위 환산

12 자루= 1 타

12 타 = 1 그로스= 144 자루

나) 필타는 \* 상자 \*등으로 보고하는 사례가 있으니 반드시 지정단위 kg으로 환산하여 조사한다.

다) 시계 조사는 손목시계, 캐주얼시계, 탁상시계, 전자시계, 전기시계로 구분 조사한다.

## 부록 1. 주요 상품 생산자 판매가격표

부록 1 . 주요상품 생산자 판매가격 일람표

< 1974년 7월~8월평균가격 >

품명	단위	가격	비고
210			
유연탄	%	24,500	7,300 cal 이상
무연탄	%	5,100~5,390	3급 5,300 Cal 이상
290			
소금(천일염)	%	1,478	천일염 2등급
311~312			
아마인유	kg	381	180 kg : 68,500 원
밀가루	%	1급: 91,908 2급: 85,544	1급 22kg들이 1포대, 2,022 원 2급 22kg들이 " , 1,882 원
라면	kg	250~292	
국수	"	121	24 kg들이 상자, 2,900 원
소세지(햄)	"	1,100	
닭고기(가금)	"	684	
쇠고기	"	1,417	
돼지고기	"	750	
설탕	"	406~412	15 kg들이, 6,096 ~ 6,179 원
포도당	"	263	20 kg들이, 5,255 원
참기름	ℓ	1,100	20 ℓ 초유, 22,000 "
비강유	"	283	200 ℓ들이, 56,670 "
채종유	"	415	200 ℓ들이, 82,924 "
배합사료	kg	72	25 kg, 1,800 원

품 명	단 위	가 격	비 고
전 분	kg	157 ~ 175	1 급품 22 kg : 3,450 원
간 장	ℓ	150	900 ml 들이 12 병, 1,620 원
된 장	kg	138	500g 들이 24포, 1,650 원
고 추 장	"	270	500 g 들이 비닐포장 24 포, 3,240 원
식 초	"	444	180 ml × 30개 들이 = 2,400 원
소금(재래염)	"	40	60 kg에, 2,400 원
연유및분유	"	연유: 1,075 분유: 1,044	연유 397 g 48 개, 12,960 원 분유 450 g 24 개, 11,280 원
313			
탁 주	ℓ	32 ~ 35	탁주 20 ℓ, 650 원
약 주	"	95	20 ℓ, 1,900 "
청 주	"	432 ~ 575	특급 1.8 ℓ 10 병, 19,350 원 1급 1.8 ℓ 10 병, 7,770 원
백 주	"	358	640 ml 들이 24 병, 5,497 원
포 도 주	"	239	" " , 3,671 원
사 이 다	"	206	340 ml 24 병, 1,680 원
클 라	"	325	190 ml 24 병, 1,480 원
쥬우스(환타)	"	190	355 ml 24 병, 1,622 "
카 피	kg	9,067	150 g 들이 24 병, 32,640 원
메 칠 알 클	"	193	에틸 94% 200 ℓ, 38,500 원
321			
면 사	kg	648 ~ 718	23 B 단사 ~ 30 B 단사
아크릴릭사	"	1,320	453.6 g, 598 원
인 건 사	"	1,450	90.7 kg, 131,600 원

품명	단위	가격	비고
아베타미트사	kg	1,125	90.7 kg, 102,000 원
포라체스텔사	"	1,429~1,344	453.6 g, 636 원 " , 609 원
나이론사	"	1,068~1,052	453.6 g, 54 "
혼방모사	"	3,532	188 4 합 453.6 g, 1,600 원
어망사	"	838	210 D/24 F 453.6 g, 380 원
양말족		280~300	
스타킹	"	132	
린닝샤쓰 (메리츠사)	매	310	남자용 반소매 38 S 10 매, 3,100 원
팔복	m	약 133	생지 30 m, 3,600 원
내팔복	"	약 122	2 호생지 30 m, 3,348 원
포플린	"	170	30 S x 30 S 30 m, 4,600 원
응	"	195	백색용 36.5 m, 6,400 원
데트론	"	307	백색 2.75 m, 7,567 원
나이론타투다	"	103	27.5 m, 2,550 원
솜	kg	500	A급 3 kg들이 10 포, 15,000 원
화학솜	"	625	A급 2 kg들이 10 포, 12,500 원
322			
남자용내의	착	1,200~2,500	남자용 8 출주복 1,200 원 " 겨울용 2,500 원
와이샤쓰	매	1,600	
323			
피혁	m	6,040	
324			

품명	단위	가격	비고
구두	족	4,500	
331			
육송각재	㎡	44,910	6 × 6 × 273 cm 0.334㎡ 15,000 원
나왕각재	㎡	60,060	6 × 6 × 273 cm 0.334㎡ 20,000 원
미송각재	㎡	52,395	6 × 6 × 273 cm 0.334㎡ 17,500 원
미솔판재	㎡	53,892	9 0.334㎡ 18,000 원
합판	㎡	18,921	0.36 × 121 × 242 cm 100 장, 63,600 원 1.2 × 121 × 243 cm 100 장, 20,000 원
하드보드	㎡	96,969	0.3 × 121 × 273 cm 100 장 96,000 원
칠보오드	㎡	50,000	0.95 × 121 × 242 cm 100 장 139,000 원
342			
노우트	권	15~40	국교생용 ~ 중고생용
351			
규산소오다	kg	465	330 kg, 150,000 원
복합비료	㎏	35,600	25 kg 100 포대, 89,000 원
요소비료	㎏	38,960	질소 46% 25 kg들이 100 포대, 97,400 원
살충제	kg	1,100	MFP 유계 50% 100cc 50 병들이, 5,500 원
스테아린산	㎏	250	공업용 ㎏당, 250,000 원
황산	㎏	18	98% ㎏당, 18,000 원
염산	㎏	20	35% ㎏당, 20,000 원
인산	㎏	370	85% ㎏당, 370,000 원
빙초산	㎏	274	공업용 99% ㎏당, 273,874 원
질산	㎏	55	의산공업용 42% ㎏당, 55,000 원

품 명	단 위	가 격	비 고
암모니아수	kg	60	27% 20kg들이 병당, 1,200원
유 황	"	60	98% 분말 %, 60,000원
아 연 화	"	630	99% %, 630,000원
합성 고무	"	410	%, 410,000원
고무가황촉진제	"	500	M형 20kg, 10,000원
라텍스	"	600	158.4 l, 95,000원
탄산칼슘	"	50	%, 50,000원
그리세린	"	1,800	250kg (94%), 450,000원
붕 산	"	200	94% %당, 200,000원
중 조 (중탄산소다)	"	59	98% %당, 59,000원
포르마린	"	16	37% %당, 16,000원
가성소다	"	75	액체 99.9% 250kg, 18,750원
소다 화	"	54	중 98% %당, 54,380원
표백분	"	225	외산 60% %당, 225,000원
메틸알콜	"	100	메칠 98% 15kg 15,000원
황연안료	"	3,600	황연 10kg, 36,000원
직접염료	"	1,280	직접특GW상품 100kg, 128,000원
유화소다	"	80	48% %당, 80,000원
청화소다	"	26	외산공업용 98% %, 26,000원
염화칼슘	"	21	72% %, 20,500원
탄산마그네슘	"	100	탄산마그네슘분말 %, 100,000원
가 소 제 (D.O.P)	"	400	DOP 200kg



품 명	단 위	카 격	비 고
플리에치렌	kg	221	L.D ㄱ당 , 221,463 원
플라스치렌수지	"	481	GP ㄱ당 , 480,579 원
폴리염화비닐 수지	"	224	중합도 \$ 1,000 ㄱ당 , 224,444 원
카 바 이 트	"	76	과 5 mm 이상 A급 225 kg , 17,000 원
아 세 치 렌	"	567	순도 99 % 이상 6 ㄱ들이 100 병 , 340,000 원
352			
카 본 블랙	kg	173	
(제라친) 다이내마이트	"	324	제라친 다이내마이트 22.5 ㄱ들이상자 , 7,280 원
뇌 관	개	137	100개 , 1,365 원
도 화 선	m	20	제 2 중 100m , 1,987 원
파라핀왁스	kg	280	국산 140도 ㄱ당 , 280,000 원
성 양	1,000갑	42,998	8 각성양 120 갑들이 , 5,160 원
방 수 액	kg	111	SP 2 호 180 ㄱ , 20,000 원
에나멜페인트	ㄱ	903	외부용백색 18 ㄱ , 16,250
바 니 스	"	625	페놀수지 18 ㄱ , 1,250 원
잉크(동사용)	kg	320	1 ㄱ들이 10 통 , 3,197 원
세 탁 비 누	"	157	350 ㄱ 63개 , 3,465 원
세 탁용 합성세 제	"	221	500 ㄱ들이 24 봉 , 2,650
화 장 비 누	"		
치 약	"	780	150 ㄱ 알미늄튜브 60개 , 7,020
353			
등 유	ㄱ	67	200 ㄱ , 13,454 원

품명	단위	가격	비고
경유	ℓ	60	200 ℓ , 12,012원
휘발유	ℓ	167~198	고급 200 ℓ , 39,526 원 보통 200 ℓ , 33,474 원
중유	ℓ	38	
방카 O 유	ℓ	31	
윤활유	ℓ	258	
구리스	kg		
354			
연탄	℥	6,240~9,900	22 공탄 100개 , 2,600 원 31 " 100개 , 5,500
마세크탄	℥	13,533	5,600 Cal 이상
로우크스	℥	53,000	외산주물용 상품
355			
고무신	족	185~2,100	
운동화	℥	505~770	농구화 770
369			
석면스레트	m <sup>2</sup>	333	KB 소골 72 × 182 (cm) 100 장 , 43,600 원
시멘트	℥	11,425	40 kg 100 포대 45,700
백시멘트	℥	36,300	40 kg 100 포대 145,200
소석회	℥	1,200	( 10 kg 내외 ) 100 포대 1,200
적벽돌	매	18	
기와	1,000매	30,000	시멘트제 적색 100 장 3,000
타일	m <sup>2</sup>	1,149~1,210	
타일	1,000	59,000	B - 6 15 × 19 × 3.9 cm 100 매 5,900 원

품명	단위	가격	비고
흙관	본	9,000	KS 보통관 6 kg/cm <sup>2</sup> 60 × 5 × 243 cm 10 개 90,000 원
콘크리트관주	"	7,700	KS 14 cm × 7 m × 150 kg 10 개 77,000 원
콘크리트관	"	2,400	철근입 60 × 100 cm 10 개 24,000 원
372			
금괴	g	2,099	순도 99 %
은괴	"	68	순도 70 %
전기동	kg	1,240	99.9 % 이상 % 1,240,000 원
연괴	"	340	99.9 % 이상 % 340,000 원
알루미늄괴	"	283	99.5 % 이상 % 282,500 원
아연괴	"	436	99.9 % 이상 436,000 원
주석괴	"	4,000	99.9 % 이상
니켈괴	"	2,400	99.9 % 이상
망강	"	190	고탄소 73 ~ 75 % %당 190,000 원
연판	"	400	91 × 182 cm 2mm 100 kg 40,000 원
숫쇠판	"		
381			
알루미늄샷취	kg	8	100 kg 750 원
철징(쇠못)	"	158	5 cm 50 kg 7,900 원
전기용접봉	"	210	KSE 4301 4 mm 100 kg에 21,000 원
383			
라디오	대	8,300	트랜지스터식 (소매)
TV수상기	"	112,000	트랜지스터식 48.26 cm (소매)

품 .명	단 위	가 격	비 고
390 연 필	타	167(연필) 167(색연필)	HB 및 사무용 적색
볼 펜	개	23	
크레파스	갑	180	24색 1타 2,160원
만년필	개	390	파이롯트 만년필
백 목	갑	30	20 본드리 100갑 3,000원

## 부록 2. 도량형 단위 환산 표

부록 2. 도량형단위환산표

길이

	척(尺)	정(町)	리(里)	미(米)	초(吋)	척(尺)	파(碼)	리(里)
척(尺)	1	0.00277	0.000077	0.30308	11.9305	0.99421	0.331403	0.000188
정(町)	360	1	0.02777	109.09	4,294.99	357.916	19.306	0.067784
리(里)	12,960	36	1	3,927.27	154,619	12,884.9	4,394.99	2.44083
미(米)	3.3	0.009166	0.000254	1	39.3707	3.28085	1.09363	0.000621
초(吋)	0.088818	0.000232	0.000006	0.025399	1	0.08333	0.27777	0.00015
척(尺)	1.06882	0.002793	0.00007	0.304974	12	1	0.33333	0.000189
파(碼)	3.01746	0.008381	0.000232	0.914383	36	3	1	0.000568
리(里)	5,310.73	14,752	0.409779	1,609.31	63,360	5,280	1,760	1

중량

	돈(匁)	관(貫)	근(斤)	그램(克)	온스(oz)	파운드(lbs)	돈(匁)	돈(匁)
돈(匁)	1	0.001	0.00625	3.75	0.132277	0.00267	0.000004	0.000004
관(貫)	1,000	1	6.25	3,750	132,277	8,26732	0.00369	0.004133
근(斤)	160	0.16	1	600	21,1641	1,32277	0.00059	0.000661
그램(克)	0.26666	0.000266	0.001666	1	0.035273	0.002204	0.000009	0.000001
온스(oz)	7.55984	0.007559	0.047249	23.3495	1	0.0625	0.000027	0.000031
파운드(lbs)	120.958	0.120958	0.755988	453.592	16	1	0.000466	0.0005
돈(匁)(영)	270.946	270.946	1,693.41	1,016.047	35,840	2,240	1	1.12
돈(匁)(미)	241.916	241.916	1,511.97	907.178	32,000	2,000	0.892857	1

용 적

	홉(舍)	승(秤)	두(斗)	석(石)	입방미(坪)	리터(ℓ)	개(명)	개(리)
홉(舍)	1	0.1	0.01	0.001	0.00018	0.18039	0.039682	0.047659
승(秤)	10	1	0.1	0.01	0.001803	1.8039	0.396185	0.476567
두(斗)	100	10	1	0.1	0.018039	18.039	3.96815	4.76567
석(石)	1,000	100	10	1	0.18039	180.39	39.6815	47.6567
입방미(坪)	5,543.52	554.352	55.4352	5.54352	1	1,000	219.975	264.1866
리터(ℓ)	5,543.52	0.55435	0.05543	0.00554	0.001	1	0.219975	0.264186
개(명)	25.2006	2.52006	0.252006	0.0252	0.004545	4.54596	1	1.201
개(리)	20.9833	2.09833	0.209833	0.020983	0.003785	3.78543	0.832699	1

### 부록 3. 조사 표 류



14. 유형고정 자산의  
연간취득액 및 처분액

○신규취득액: 완전히 사용한 적이 없는 유형고정자산의 취득액 설치비(외국으로부터 직접 수입한 중고물 포함)  
○중고취득액: 신규이외의 중고 자산 취득 및 설치비  
○이 문 액: 세지 양도, 폐회 등에 의한 처분 및 감소액(감가상각에 의한 감소는 포함치 않음)

구분	연간 신규 취득액					연간 중고 취득액					연간 처분 및 손회액				
	액	액	액	액	액	액	액	액	액	액	액	액	액	액	액
(가) 토지						15400					10000				
(나) 건물 및 구축물			30000								50000				
(다) 기계기구 및 장치						250000									
(라) 차량선박운반구			150000								20000				
합계			450000			404000					220000				

15. 간접가계정

○간접가계정은 연도별 자본 형성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연말 잔액을 기입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연간 증가액이 연간감소액 보다 적은 경우에는 연간증감액에 스포시를 하고 그 차액을 기입한다.

(가) 간접가계정 연간 증가					(나) 간접가계정 연간 감소					(다) 연간 증감((가)-(나))				
액	액	액	액	액	액	액	액	액	액	액	액	액	액	액
		60640			300000					20640				

16. 조사표 작성 근거

해당항에 O로

(가) 장 부 ( O ) (나) 일 부 기 역 ( ) (다) 기 역 ( )

주요

○주분이 어떠한 종목명, 사업제 사용안함, 기타 참고사항등을 기입한다.

2118호 254 2634

조사에 관한 사항

1. 조사표 작성년월일	2. 응답자소속	3. 응답자성명	4. 조사원성명	5. 지도원성명
1975년 4월 10일	홍무과 * 전화(22-1234) (22-50)	서오공 인	김노석 인	박진규 인

지정통계  
제 17 호

통계법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이 조사표  
에 기재되는 내용은 통계 목적이란 사  
용하여 그 이질은 면에 보장 됩니다.

1974년

광공업통계조사표 (I)

조사구번호	조사표번호	사업제번호	산업분류	창설년	조직형태	차분계급
2114-03	13	*	*	*	*	*

1. 사업제명 및 소재지

사업제명 한국 XX 주식회사 부산공장  
소재지 부산 (전화 22-1234번)  
사용부서 영도 ① 신항 ② 구도  
동 (10동 2번)

2. 회사명 및 소재지

회사명 한국 XX 주식회사  
소재지 부산 (전화 22-8462번)  
부산지점시 ① 영도 ② 구도  
동 (5동 1번)

3. 작성년월일

1975년 4월 10일

4. 조직 형태

기업형태 O  
① 주식회사 ( O ) ② 기타법인 ( ) 다 거 인 ( )

5. 지점명 또는 출자금액 (법인에 한함)

100% 12.35 천에 출자가 산출액 금액

액	액	액	액	액	액
		600000			

6. 주요생산품명 및 생산과정

(가) 주요 생산품명 ① XX제품 ② XX제품 ③ XX제품  
(나) 주요사용인력종류 ① 설계 ② 생산 ③ 검사  
(다) 생산과정: 재료 → 가공 → 조립 → 프레스 → 사출 → 제품

주(註) \*항은 기입하지 않는다.

경제기획원



적요 ○ 갑고사상(관할사업체의 특성 연간 실적 동향등)

지정통계 제 17 호

통계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이 조사표에 기재되는 내용은 통계 목적에만 사용하며 그 비밀은 절대 보장된다.

# 1974년 광공업통계조사표〔Ⅱ〕 (본사 본점 조사용)

조사구번호	조사표번호	사업체번호	산업분류	창설년	조직형태	자본제종
1111-이	10	☆	☆	☆	☆	☆

1. 본사(본점)명 및 소재지

본사명 한국 X X 주식회사

대표자명 윤 씨 울 (전화 74 구 8462 번)

충청북도 종로 시 경운 로 동 가동 90 빈자의 / 호  
부산지하철도 1번선 구 읍면 리 ( 5 통 / 반)

2. 창설년 월 일

19 55 년 8 월 15 일

3. 조직 형태

해당란에 O표

(가) 주식회사( O ) (나) 기타법인( ) (다) 개인( )

4. 자본금 또는 출자금

법인에 한하여  
1974. 12. 31 현재  
불입이 완료된 금액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천원
	1	5	0	0	0	0	0

조사에 관한 사항

조사표 1. 작성 년월일	2. 응답자소속	3. 응답자 성명	4. 조사원 성명	5. 지도원 성명
1975년 4월 15일	충무과 전화(74-8462) 교차로 100	박영식인	홍사영인	이우석인

주(註) ☆ 란은 기입하지 않는다

경 제 기 획 원

